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 일러두기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안전 보건 경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제2장)의 조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구성]

- 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II. 법 조문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방법
  -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 IV.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 V.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 여기에서 제시된 실행방법, 자율체크리스트와 사례는 각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기업별로 규모,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생산방식, 조직의 활동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갖추고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은 기업 내의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외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및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및 「업종별 자율점검표」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http://www.koshasafety.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

본 매뉴얼은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조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유의사항 및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 나아가 안전보건을 기업 문화(Safety culture)로  
정착시켜 작업자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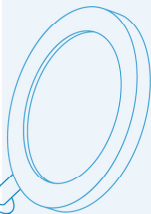
안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인내심을 갖고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지만 기업은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은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 CONTENTS

|  |     |
|--|-----|
| <b>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b> .....               | 7   |
| <b>II.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b> .....   | 15  |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22  |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         | 58  |
|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       | 61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62  |
|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68  |
| <b>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b> .....       | 69  |
| <b>IV.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b> .....        | 79  |
| <b>V.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b> .....         | 119 |
| <b>[참고]</b> 1.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  | 124 |
| 2. 20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     | 125 |
| 3.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 126 |
|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 128 |
| 5.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       | 129 |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1 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3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적용범위(법 제3조)

-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적용대상  |
|-----------------|---|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li> <li>•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li> <li>*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li> <li>•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li> </ul> |
| 개인사업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li> </ul>   |

- **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 2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아래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됩니다.
  - ① 개인사업주
  -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4 벌칙규정(제재규정)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처벌규정의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다음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제4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5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2 처벌의 내용

- 처벌 대상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 처벌의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① 종사자의 사망 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br>(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br>직업성 질병 재해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③ 가중처벌                      | 중대산업재해로 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br>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 3 양벌규정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며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 ① 종사자의 사망 시                 | 50억원 이하의 벌금<br>(행위자 처벌 외) |
| ② 종사자의 부상 또는<br>직업성 질병 재해 시 | 10억원 이하의 벌금<br>(행위자 처벌 외) |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4 손해배상(법 제15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 교육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유의

-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며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 교육시간 및 내용

-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됩니다.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5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이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시 필요한 조치

✦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은 II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꼭 읽어 보세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필독사항)

#### 안전한 일터를 위한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모든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기업 경영책임자보다는 현장 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사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안전조직과 안전활동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되었는지, 기업 내 안전문화(Safety culture)가 정착되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상품을 생산하도록 독촉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총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개선해 나갈 때에만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II 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된 각 항목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 취지와 함께 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실행할 때의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각종 서식과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II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모습이며, **조직의 규모와 작업 및 근로형태 등에 따라 실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절차를 따르든 중요한 것은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종사자의 참여입니다. 종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 활동을 하는 **종사자들은 위험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고,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요소



또한,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체계구축의 목적이지 **방대한 서류 작업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표준작업매뉴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의 투입, 전담 조직의 설치, 제도개선 등을 행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활동의 본모습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은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 규모와 생산방식,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방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규모가 작고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업 내부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조차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즉시 시정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사항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 민간재해예방기관 목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 〉 검색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예시(81p)

## 중대재해처벌법과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당연히 수사나 처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① 안전에 대한 무관심, ②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③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도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위험의 방치와 미준수 관행의 묵인을 막기 위함입니다.**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류상만이 아닌 **현장관리자,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및 인력의 투입, 교육, 적절한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주된 위험요인이나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절대 지나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공요인: 경영책임자의 신념과 종사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조직, 인력, 예산, 도급 등을 관리한다면 안전보건은 작업장 내에서 일상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성공은 기업 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종사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면, 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결국에는 기업 내 중대사고를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3호)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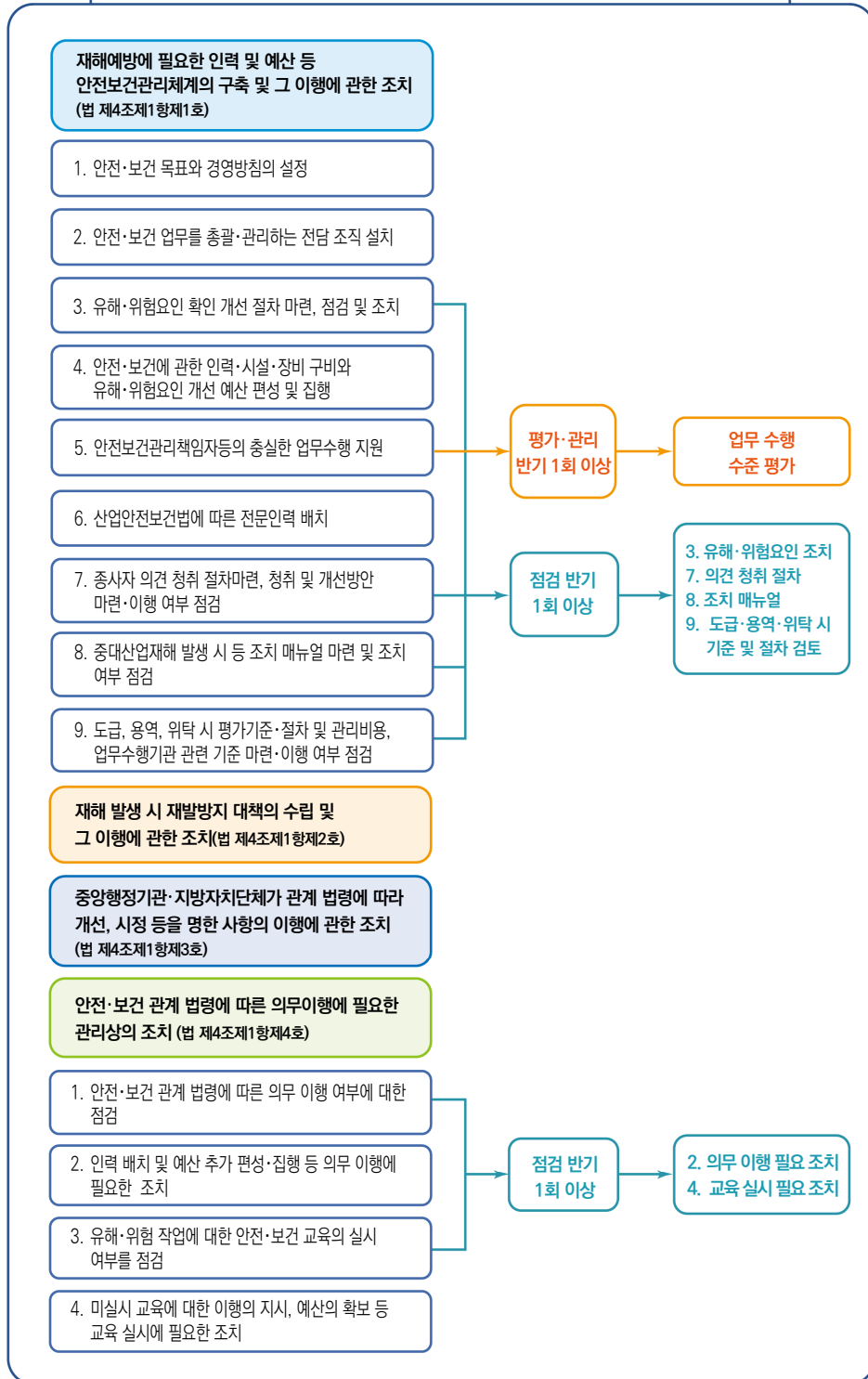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 ④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





# 1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4. 생략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고 있으며,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조문의 취지

-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 어떤 프로세스, 체계의 성공은 단순히 제도의 설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목표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 실행방법

-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 여부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성과가 좌우됩니다.
    -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의지를 강조합니다.
- ☞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 예시(83p)
- 안전·보건 목표는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로 설정하고 최종목표 이외에 과정 중심(재해 예방 활동) 목표를 포함하여 측정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 예를 들어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1~2개로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또는 유사·동종 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끼임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이행률 ▲ 끼임 작업 예방 안전작업 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과정 중심 목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 과정 중심 목표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li> <li>•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률</li> <li>• 위험요인 발굴 건수</li> <li>• 작업표준 및 지침서 변경 시 개정률</li> <li>•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li> <li>•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li> <li>•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li> <li>•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li> <li>•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li> <li>•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li> <li>•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li> <li>• '재해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li> <li>•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li> <li>• 건강검진 실시율</li> <li>• 유소견자 상담률</li> <li>•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율</li> </ul> |
|--|--|

☞ 안전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87~88p)

- 경영방침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에게도 알려 안전보건 목표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의사항

- 문서작업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과도한 문서작업은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 각종 회의체, CEO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합니다.
  - 종사자들에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할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은 이하 28p 참조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 안전<br>보건<br>목표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 |
|                      | ②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 ✓ |
| 안전<br>보건<br>경영<br>방침 | ①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 |
|                      | 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
|                      | ③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 |

##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2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조문의 취지

- 중대재해예방과 이를 위한 체계 구축은 기업경영 전반에서 이해되고 중요하게 고려될 때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위험요소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전담 조직이 없다면 안전보건 사항이 고려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실행방법

-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이 총 3명(위탁인력 포함) 이상이면서
    - \* ① 안전관리자(제17조), ② 보건관리자(제18조),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④ 산업보건의(제22조) ⇨ 전문인력 배치기준(100p)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 ②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입니다.

-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안전·보건과 함께 경영시스템 까지 고려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관리가 독립적이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전담 조직의 인원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2명 이상의 합리적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 전담 조직 설치 조직도 예시(89p)
-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만약,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목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 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유의사항**

-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해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FAQ 16**

**<질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 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나요?

**<답변>**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가 아닌, 위 작업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p>① (전담 조직 설치 대상인 경우) 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p> <p>*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p> | ✓ |
| <p>②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했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했다.</p>                                 | ✓ |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조문의 취지

-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행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 물질, 작업별 위험관리 목록 작성 예시(90~91p)
  - 유해·위험요인은 ▲ 회사의 조직 문화 ▲ 설비와 취급물질 ▲ 비상상황 ▲ 수급인(근로자), 방문객, 인근주민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악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기준 예시

출처: ISO 45001:2018

|                  |                                   |
|------------------|-----------------------------------|
| ① 조직 문화적 측면      | 안전을 경시하는 풍토, 과중한 노동, 각종 차별과 괴롭힘 등 |
| ② 설비와 취급물질 등     | 위험기계,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형태            |
| ③ 비상시, 긴급상황 발생   | 화재, 폭발, 천재지변 등                    |
| ④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사람 | 수급인(근로자), 방문객, 지역주민 등             |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적극 활용합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련·예규·고시
    - ☞ 위험평가 흐름도(35p) /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92p)
    -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참고
  
- **중소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하므로 정밀한 진단이 아니라도 일정한 정보와 가이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 ① 먼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파악 → ②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설치  
→ ③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④ 종사자 대상 숙지 교육



### 참고

###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예시)

- ① **고소작업**
  -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식별하여 직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추락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확인합니다.
- ② **불량한 시설관리**
  - 어떤 물건이나 유출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고, 각 교대근무 종료나 금요일 오후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정리합니다.
- ③ **전기·전선 작업**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설치·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원연장용 코드는 장기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④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 노동자들이 빨리 일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주위가 산만한 운전할 때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합니다.
- 또한 굴착기 등 작업 시 다른 작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며, 종사자가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잠금 및 표지부착(Lock Out / Tag Out)

- 정비 등의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 절차는 끼임 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 ⑥ 화학물질

- 화학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의 어떤 성분인지, 어떤 목적으로 구매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 ⑦ 밀폐공간

- 밀폐공간은 허가 없이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재해감소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①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유해·위험요인을 아예 제거합니다.
  - ②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합니다.
  - ③ 유해·위험요인의 대체도 어렵다면 유해·위험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방호덮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통제를 합니다.(공학적·기술적 통제)
  - ④ 작업방법 변경이나 작업허가제 도입 등 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행정적 통제)
- 끼임 위험 기계 기구, 밀폐공간 작업에서도 재해감소대책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중소기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 ① 작업절차서 등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 ② 수칙을 준수한 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고

## 정비 등의 작업 시 잠금 및 표지부착(Lock Out / Tag Out)

▶ 기계의 정비, 수리 등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기법(행정적 통제)

\* 전기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자물쇠, 걸쇠 등

### ▶ 작업절차

- ①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 ② 정지
- ③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④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⑤ 정비 실시 → ⑥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 ⑦ 잠금장치 및 표지판 제거 → ⑧ 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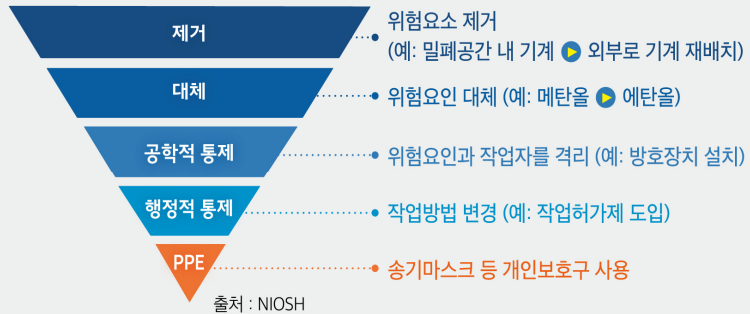
### 참고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의 효과성 비교

### 효과가 가장 큼

- 
- 
- 
- 
- 

### 효과가 가장 낮음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재해감소대책 예시(1)

- ① (제거)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 ② (대체) 유해물질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합니다.
- ③ (공학적통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배관, 설비 연결부 등에 누출방지조치를 실시합니다.
- ④ (행정적통제) 작업절차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⑤ (개인보호장비) 방독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 위험요인별 재해감소대책 예시(2)

| 위험요인          | ① 제거·대체  | ② 공학적 통제  | ③ 행정적 통제                           | ④ 보호구 착용                          |
|---------------|--|---|------------------------------------|-----------------------------------|
| 끼임 위험<br>기계기구 | 끼임 위험이 없는<br>자동화 기계 도입                           | 덮개 등 방호장치<br>설치                                     | '잠금 및<br>표지부착(LOTO)',<br>작업허가제 도입  | 말려 들어갈<br>위험이 없는<br>작업복 착용        |
| 인화성<br>가스     | 인화성 완화<br><b>예</b> 아세틸렌→LPG                      | 전기설비 방폭 조치,<br>가스검지기·긴급차단<br>장치 연동 설치,<br>환기배기장치 설치 | 작업절차서 준수,<br>정비작업허가제 도입            | 제전작업복 착용,<br>가스검지기 휴대,<br>방폭공구 사용 |
| 밀폐공간          | 밀폐공간 내부<br>가스발생 설비 제거<br><b>예</b> 발전기를 외부에<br>설치 | 환기배기장치 설치,<br>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출입금지 표지,<br>작업허가제 도입,<br>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
| 화학물질          | 저독성 물질 사용<br><b>예</b> 발암성→비발암성                   | 설비 밀폐,<br>환기배기장치 설치                                 | 취급 화학물질 유해성<br>교육, 경고표지,<br>특수건강검진 | 방독마스크,<br>피부보호구 등                 |

☞ 위험유형별 사고사례 및 원인과 대책(93~94p)

### 유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조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항에 앞서 이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의 통제·제거가 쉽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낮은 요인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확인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평가 일자만 바꾸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 또한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기술과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적격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여력이 안 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특별히 살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작업자가 변경될 때,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가 변경될 때 꼭 살핍니다.
  - 이 경우, 작성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확인하여 현행화합니다.

- 조직의 작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알리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 소속 근로자 외에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고객, 인근 주민, 조직의 공급망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젊거나 숙련되지 못한 근로자, 임신, 장애, 외국인 또는 고령의 근로자와 같은 그룹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외국인이 혼재된 경우 위험을 알리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해·위험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병기합니다.
  - 고령자는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더욱 주의합니다.



### 참고

### 글로벌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 기준!

- ▶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은 핵심 안전수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
  -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는 10대 핵심 위반사항(10 Golden Rules), 생명을 구하는 핵심규정(Life-Saving Rules Campaign) 등의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종사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

#### ▶ A사의 10대 핵심 위반사항(10 Golden Rules)

1. 사고 은폐(Hiding Incident)
  2. 제한속도 10km/h 초과 주행(10km/h over speed driving)
  3. 운전 중 통화, 문자 확인, 영상물 시청  
(Any cell phone use, text/video/call etc. while driving)
  4.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Not fastening seat belt while driving)
  5. 사업장 폭력(Workplace violence)
  6. 허가 대상 밀폐공간 허가 없이 작업(Confined space work without permit)
  7. 잠금 및 표지부착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Lock out/Tag out)
  8. 추락 예방 조치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fall protection)
  9. 안전작업허가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Safety work permit)
  10. 변경관리 미실시 작업(Work without Management of change process)
- ※ 10대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responsible person) 및 매니저(manager) 등을 징계위원회 회부

#### ▶ B사의 Life-Saving Rules Campaign

- 생명을 구하는 핵심규정으로 총 9가지\*에 대해 중점관리
  - \* 운전, 차량 / 작업허가 / 에너지차단 / 위험한 대기(大氣)환경 / 고소작업 / 협력사 관리 / 변경관리 / 안전보호구 / 안전설비·장비

## 정부지원

-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120억 미만)은 무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20%)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V.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안내 중 위험성평가 컨설팅·인정사업(123p) 참고

☞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참고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투자혁신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V.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안내 중 클린사업장조성지원(121p) 참고

|  |  |
|--|--|
| <p>안전투자 혁신사업 안내 바로가기<br/>(위험기계 교체, 위험 노후공정 개선 필요비용 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li> <li>• 문의처: 1644-4555</li> </ul>   |
| <p>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내 바로가기<br/>(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재지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사업개시일 홈페이지 별도 게시 예정)</li> <li>• 문의처: 1544-3088</li> </ul>                         |
| <p>산재예방시설용자지원 안내 바로가기<br/>(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 장기저리 용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li> <li>* 신청서류 양식: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li> <li>• 문의처: 1544-3088</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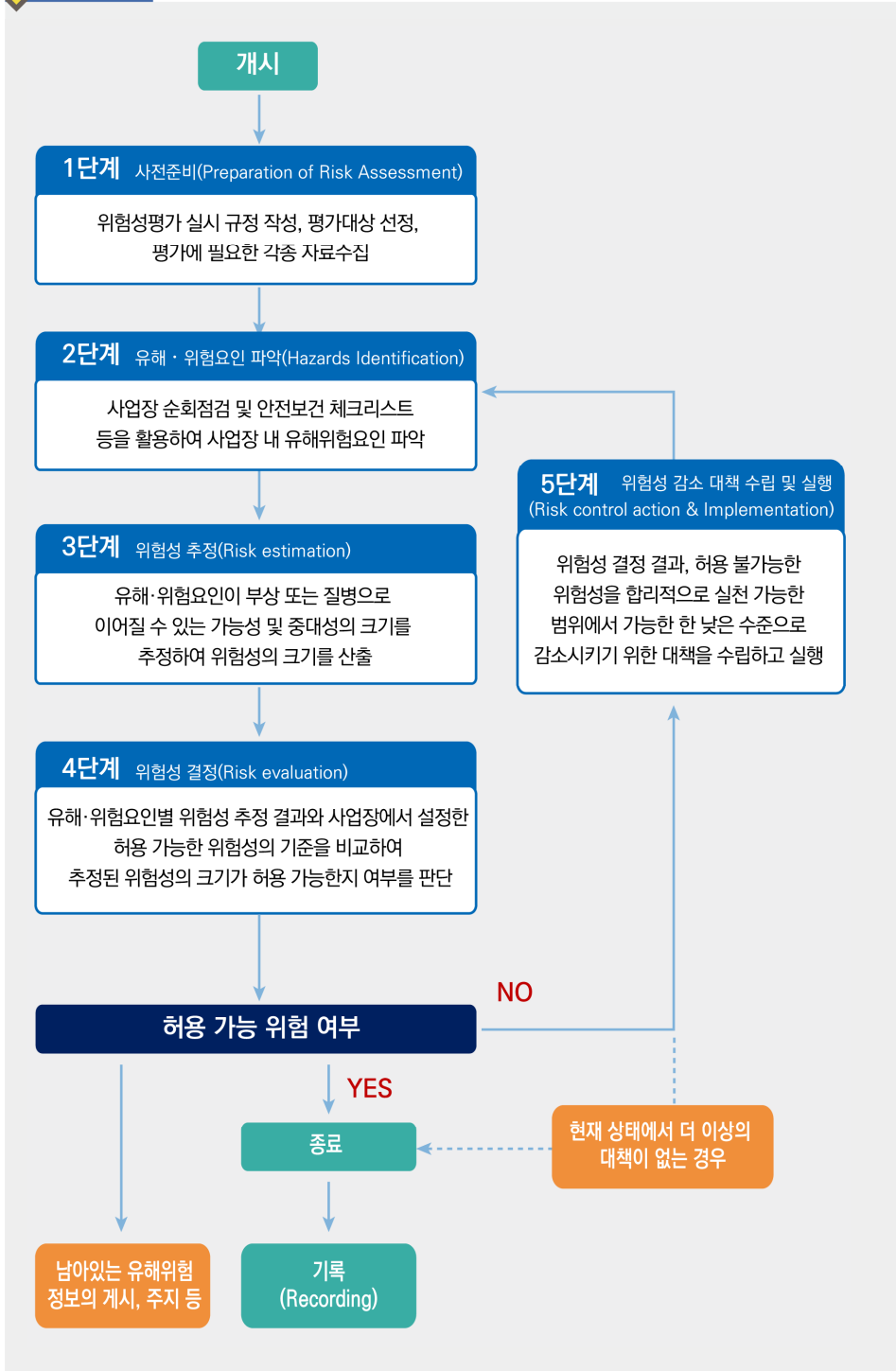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 |
| ②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 |
| ③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 |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 |



참고

### 위험성평가 흐름도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조문의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노력이 기업의 경영상 과도한 손해를 가져올 정도까지 초치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후 순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실행방법

-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험요인 대체·제거 및 통제를 위한 시설과 장비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등 인력\*\*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등 포함
    - \*\* 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2인 이상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인력 등
- 중소기업마다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기업의 규모와 보유한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 예산편성항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22.2월)」에서 9개 항목을 제시(아래 참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97p)

- 다만,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을 계획한 것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시행령 제13조

- (도입) '20.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는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에서는 예산 반영 시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평가할 항목으로 아래 9개 항목을 제시함

- ①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 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 ③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 ④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⑤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⑥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 ⑦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비용
- ⑧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 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 유의사항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에 필요한 인력투입·장비·시설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방호조치, 작업 절차 변경 등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종사자 교육과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임시적인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또는 통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은 편성했지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지만, 작업발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 끼임 방지시설,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V.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안내 중 클린사업장조성지원(121p) 참고

|  |  |
|--|--|
| <p>안전투자 혁신사업 안내 바로가기<br/>(위험기계 교체, 위험 노후공정 개선 필요비용 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li> <li>• 문의처: 1644-4555</li> </ul>   |
| <p>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내 바로가기<br/>(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재지 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사업개시일 홈페이지 별도 게시 예정)</li> <li>• 문의처: 1544-3088</li> </ul>                        |
| <p>산재예방시설용자지원 안내 바로가기<br/>(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 장기저리 융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li> <li>* 신청서류 양식: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li> <li>• 문의처: 1544-3088</li> </ul> |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p>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p>                    | <p>✓</p> |
| <p>②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p> | <p>✓</p> |
| <p>③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p>  | <p>✓</p> |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조문의 취지

- 경영책임자가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행방법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직책                |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
| 안전보건<br>관리<br>책임자 |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br>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br>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br>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br>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br>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br>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br>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br>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 직장·반장 등의 중간관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직책     |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
| 관리 감독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li> <li>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li> <li>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li>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역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li> <li>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li> </ol>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을 주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됩니다.

| 직책          |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3조)   |
|-------------|--|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li>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li> <li>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li> <li>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li> <li>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li> </ol> |

-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주어야 합니다.
  - 특히,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줍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합니다.

☞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99p)



**<질문>** '22.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 까지인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22.6.30.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집행하므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은 이들이 역량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도록 조직 내·외부 교육 또는 전문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통해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 ✓ |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있다. | ✓ |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6호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조문의 취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 또한, 전문인력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실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해당 전문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말합니다.
    - ☞ 전문인력 배치기준(100p) 및 담당업무(101p),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127p) 참고
-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 참고

## 전문인력 외부 전문기관 위탁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19조)

-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위탁 가능

-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전문인력 배치의무를 면제하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산업보건의)는
  -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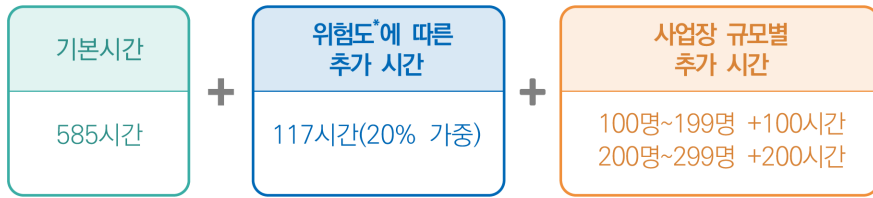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FAQ 25

**<질문>**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건설공사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전문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안전·보건 관리 전문인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시간(고시내용 요약)



\* 재해율 상위 10% 세부업종 : 금속광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등 25개

###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문인력 중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인력은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력의 배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조직 내 신뢰를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자율 체크리스트

①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배치했다.

\* 기업규제완화법에서 면제하거나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

✓

②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특히,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겸직하고 있는 경우

✓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7호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조문의 취지

-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경영책임자 등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급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 종사자의 참여가 없고 현장 작동성이 없다면 안전보건관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면 노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타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실행방법

-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면 먼저 종사자와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공유할 정보: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기계·기구와 유해물질의 정보, 위험요인별 제거관리방안,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
-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온라인 시스템, 신고·제안 제도 또는 간담회, 특히 작업 전 안전미팅(TBM: Tool Box Meeting)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 공식적인 협의체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도급 및 건설관련 협의체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할 때 대표되지 않는 수급인 근로자, 파견업체(근로자) 등에도 별도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작·배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검색



**참고**

**안전보건협의체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75조)**

**① 모든 업종의 도급사업**

-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법 제64조제1항)

**② 건설업**

- 120억원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20억 이상 공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를 포함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법 제75조)
- 이를 구성·운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제1항)를 각각 운영한 것으로 봄

-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작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의, 안전순찰, 안전미팅(TBM), 회의,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특히,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 참고

##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 ▶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주로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강조
  - 안전 미팅 후, 안전보건의 확보되는 경우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종사자의 의견은 검토하고 확인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 의견수렴을 통해 조치한 결과는 종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유의사항

- 종사자의 참여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충분히 이뤄질 때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참고

##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활동의 예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li> <li>•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관리, 통제방안 마련</li> <li>•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li> <li>•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li> <li>•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li> <li>•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참석</li> <li>• 현장 안전점검 실시</li> </ul> |
|--|--|

- 종사자의 의견만을 들어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방안을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FAQ 27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 |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 구성·운영하고 있다.<br>*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대상(49p)                    | ✓ |
| ③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 |
| ④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 |



참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
| 1. 토사석 광업<br>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br>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br>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r>5. 1차 금속제조업<br>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br>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br>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10. 농업<br>11. 어업<br>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br>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br>14. 정보서비스업<br>15. 금융 및 보험업<br>16. 임대업; 부동산 제외<br>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br>18. 사업지원 서비스업<br>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조문의 취지

-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조치는 2차 피해 등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고신고 및 조사·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실행방법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요 내용은 ① 작업중지 ②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③ 위험요인의 제거 ④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예**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사출성형기 상부 프레임과 이동형판 사이에 협착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조치와 매뉴얼 필수포함 사항\*

- ① 가장 먼저 사고를 목격한 인근 작업자 등이 해당 사출성형기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기를 정지합니다. 주변 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무전-전화를 통해 재해 사실을 알립니다.
  - \*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재해발생 시 보고체계
- ② 관리감독자는 119 신고, 사업주 보고와 함께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재해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지혈 등 응급조치와 후송조치를 합니다.
  - \*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의 지정, 응급조치 방법
- ③ 재해발생 장소 주변에 추가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 출입통제 및 안전 확보 조치 방법
- ④ 재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계기관 등에 재해발생 사실과 내용을 신고합니다.
  - \*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 연락처, 보고항목 등
- ⑤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과 함께 재해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 ☞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은 58p 참고

- 작성한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하고,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관계기관 연락체계 파악, 응급조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재해 발생 사실의 공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합니다.
  - 재해 발생 사실과 조사내용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업체 등에도 알리고 교육하도록 조치합니다.
    - ☞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예시(105p)
    - ☞ 추락사고 / 질식·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106~107p)
- 경영책임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방대한 서류만으로 작성된 매뉴얼은 조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간결한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가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입니다.
- 고위험 또는 복잡한 위험요인을 가진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응급구조대, 응급기관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비상상황 시 응급구조대 및 응급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규정

#### ▶ 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함

#### ▶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해야 함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 |
| ②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 |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9호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조문의 취지

- 도급·위탁·용역 등 외부인력은 수시로 작업장소가 변하고, 작업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재해에 쉽게 노출됩니다.
- 반드시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할 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일수록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쉬우나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 실행방법

- 도급·용역·위탁 등을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관련 법상 금지 또는 승인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도급금지 작업(제58조), 도급승인(제59조) 및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사업주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약하지 않습니다.
    - ☞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110p)
  - 도급 등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등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을 보장하고 수행내용을 최종 평가합니다.
  - \* 건설업 공사기간, 조선업 건조기간 등
-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검토하고 조치할 사항은 아래 활동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예시

|    |                     |  |
|----|---------------------|--|
| 계약 |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
|    |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
|    | ③ 입찰서류 검토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
|    | ④ 도급업체 계약           |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
| 수행 |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 ▲ 안전보건 정보제공<br>▲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br>▲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br>▲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br>▲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br>▲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br>▲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br>▲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 협조) |
| 종료 |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 ▲ 안전보건 업무 평가   |



### 참고

## 협력업체 단계별 안전관리 운영사례(A사)

- ▶ A사는 각 사업장별 계약 담당관(Contract Administrator) 및 공장 단위별 계약담당관(Field Contract Administrator)을 지정해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수행
- ▶ 기본적으로 6단계 절차에 따라 업체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진행

|   |                      |   |
|---|----------------------|---|
| ① | 협력업체 사전자격 심사         | 안전 / 보안 / 적정능력  |
| ② | 계약준비                 | 계약범위 / 사업장 조건 및 준수사항 / 특별요건                                     |
| ③ | 입찰 및 업체 선정           | 입찰절차 / 작업 개시 전 / 사전회의   |
| ④ | 협력업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   | 오리엔테이션 / 협력업체 교육훈련 확인   |
| ⑤ | 계약업무 코디네이션 및 안전보건 검사 | 안전작업허가 / 안전감사 / 위험성 인지 / 펠트 리더십 / 작업안전분석 / 사고관리 / 변경 관리 / 일정표 등 |
| ⑥ | 협력업체 평가              | 작업완료 또는 계약된 기간 종료   |



### 참고

## 작업허가제

### ▶ 의미

- 고위험 비정형 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 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행정적 통제방안)

\* 비정형 작업: 작업방법, 조건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계 수리, 정비, 급유, 청소, 교체 등의 작업

### ▶ 작업절차

- ①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 ②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③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④ 완료 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 작업허가제 도입 확산



☞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111p)

## 유의사항

- 도급·용역·위탁 업체와의 계약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제거·통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 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 계약담당 부서와 안전담당 부서가 분리된 경우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 관리 역량이 우수한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담당 부서가 저가 계약만을 선호하면 향후에 재해 발생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도급 사업주도 도급·용역·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고 위탁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 참고

### 협력업체 작업 시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사례

- ▶ 원료 공급업체 신입직원 A가 '가성소다'라고 적혀 있는 통에 들어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탱크에 주입한 후 오염된 과산화수소를 폐기물 탱크로리로 이송했으나, 2시간 후 탱크로리가 폭발하여 근로자 1명 사망 7명 부상('20.7월 강남구)
  - ⇒ 이 사고는 원료 공급업체의 신입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 절차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도급·용역·위탁업체 작업 시 도급인의 작업허가제 운영 등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해당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의 업무수행 이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합니다.



### 참고

## 도급·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서는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설비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보제공항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 ❶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 ❷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내용 등

### 정부지원

- 모기업(원청)보다 상대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협력업체(하청)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모기업 주도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수립·시행을 지원합니다.

☞ V.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안내 중 공생협력 프로그램(121p) 참고

☞ 공생협력프로그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고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
|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 ✓ |
|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 ✓ |
| ④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 |

## 2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4. 생략

### 조문의 취지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합니다.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실행방법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 사고 조사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발생한 사고가 협력업체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조사에 참여시킵니다.
-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합니다.
  - 현장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사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 재해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고조사자의 소속, 성명 ▲ 사고 일시·장소 ▲ 조사일시 ▲ 사고유형 ▲ 사고설비 및 물질명 ▲ 사고 개요와 원인 ▲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 ▲ 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 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예시(112p)

- 이때,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재해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했을 때도 재해조사를 합니다.

☞ 재해 감소대책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예시(113p)

- 경영책임자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 받으며, 재해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들이 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되도록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 아차 사고의 경우에도 종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차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는 조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정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 양식 예시(114p)



참고

## 경미한 사고와 징후에 대한 관리 - 아차 사고, 하인리히 법칙

### ▶ 아차 사고

-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아차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 재발방지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시행령 제4조제3호)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더 큰 산재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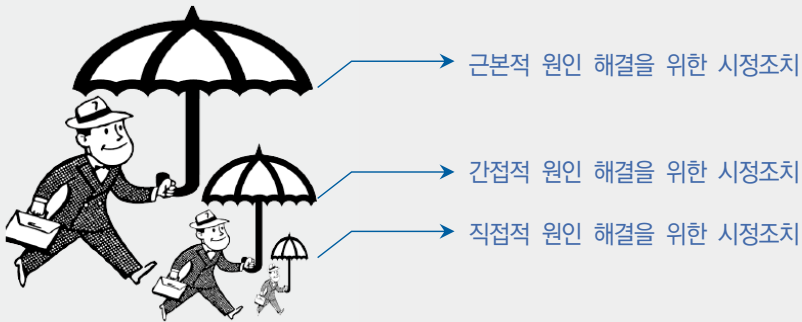
\* 예 사출성형기 끼임 사고 발생 시 동일·유사 기계·기구의 안전상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작업방법 등도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과정을 거침



**참고**

**해외 기업들의 아차 사고 예방 활동: RCA(Root Cause Analysis)**

- ▶ 해외 글로벌 기업은 아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
-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예방 활동을 진행
  - 1단계:**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함(Root Cause Analysis). 이때 발생원인은 ▲직접 원인(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위), ▲간접 원인(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
  - 2단계:**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는데, 조치계획은 ▲긴급대응 계획과, ▲영구적 대책으로 나누어 수립함
  - 3단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관리감독자, 부사장, 환경안전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검토하여 조치결과 확인을 통해 재발을 방지함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 |
| ③ 재발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 |

### 3

##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생략

### 조문의 취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에서 내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선,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그 시점에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최대한 빨리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 실행방법

- 중앙행정기관등이 각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또한, 본사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합니다.
  - 특히,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이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에게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
| ②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 |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1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2호**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조문의 취지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 내의 모든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를 보고받는 관리상의 의무를 경영책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들은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실행방법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입니다.
  -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115p)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FAQ 30

**<질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 \*\*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목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검색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의무이행 여부 점검이 과도한 문서작업 위주로 행해지거나 개선이 쉬운 사항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점검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계획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서상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 ✓ |
| ②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 |

## 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3호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제4호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조문의 취지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등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 통제하는 방법을 종사자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지 말고, 종사자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합니다.

### 실행방법

-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유형별 최저 교육시간(66p)
-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 \*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서식 예시(117p)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는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 수급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교육받지 않은 종사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들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 구분                    |                 | 신규교육      | 정기교육 / 보수교육   | 작업내용<br>변경 시(1회) | 특별교육<br>(1회) |
|-----------------------|-----------------|-----------|---|------------------|--------------|
| 근로자                   | 일반              | • 8시간     | • (일반) 분기별 6시간<br>• (사무직) 분기별 3시간<br>•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 • 2시간            | • 16시간       |
|                       | 일용              | • 1시간     | -   | • 1시간            | • 2시간        |
| 특고                    | 일반              | • 2시간     | -   | -                | • 16시간       |
|                       | 단기·간헐           | • 1시간     | -   | -                | • 2시간        |
| 안전<br>보건<br>업무<br>담당자 | 안전보건관리<br>책임자   | • 6시간 이상  |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 안전관리자/<br>보건관리자 | • 34시간 이상 |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 안전보건<br>관리담당자   | -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 -            |

## 유의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인지는 아래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방법\(116p\) 참고](#)
-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 등 참조
  -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안내서(2022.2월) 참조
  - ☞ [안전보건교육안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게시](#)

## 정부지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정기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안전보건교육 지원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www.koshats.or.kr\)](#)
  -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공단 일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①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점검하고 있다. | ✓ |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 |

##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조문의 취지

-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일차적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현장에서는 많은 작업이 도급, 용역, 위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종사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용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질 때는
  - 도급, 용역, 위탁업체 종사자에게도 경영책임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율 체크리스트

|  |   |
|--|---|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각 우수사례는 실제 기업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우수사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기업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1

## 안전이 곧 최상의 서비스: 한국공항공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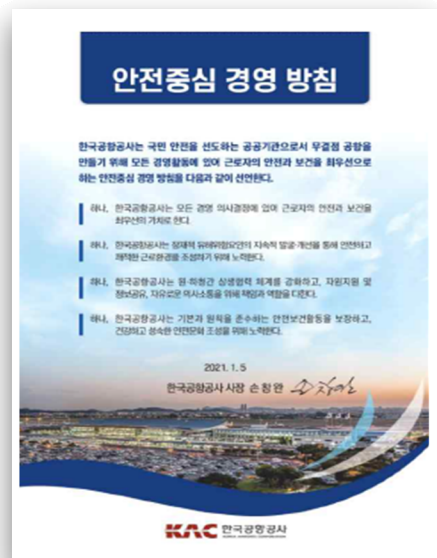
### CEO와 경영진 모두가 발로 뛰는 현장 멘토링제도 운영

한국공항공사는 CEO 및 경영진과 전국 14개 공항 등 18개 사업장을 매칭하는 ‘안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이 출선하여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CEO와 부사장은 전 사업장과 소통하고, 5명의 본부장은 각각 3~4개 멘토 사업장을 지정하여 멘티 공항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코로나 대응 상황, 건설현장 안전조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와 소통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2021년을 ‘안전중심 경영의 해’로 선포하고, 총 86회에 걸쳐 전국 현장점검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환경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2022년에는 관련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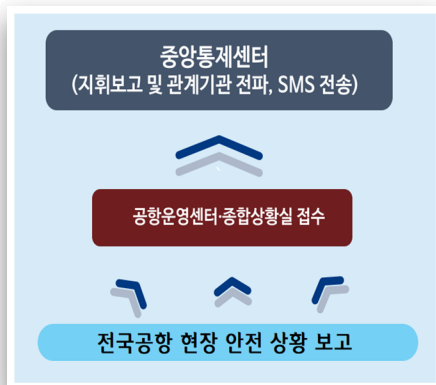
## 안전이 곧 최상의 서비스, 공항 가족 안전이 우리의 목표

공사는 전국공항의 기계, 전기 등 모든 작업현장에 안전전문기관을 통해 자율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총 2,31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1,817건을 조치했고 2022년에는 관련 예산 1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점검도 빠뜨리지 않는다. 내부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안전패트롤반을 운영하여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위험요소(37건)를 꾸준히 개선했다. 2021년에는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의 컨설팅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굴삭기 전도방지 조치 등 총 146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조치했다.

또한 안전중심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조직도 개편했다. 안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전국 공항의 현장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인 미만 중규모 이상 7개 공항에도 법적 의무를 상회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본사 중앙통제센터와 공항운영센터를 운영(3개 공항)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신속히 보고하고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부문에 대한 투자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현장 근로자의 눈높이로, 안전보건제도의 현장 수용성 강화

안전 전담 조직은 기존의 복잡한 안전 작업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작동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고소작업,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위험작업은 작업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절차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험작업 관리절차를 작업허가제로 통합했다.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건설현장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침도 만들었다.

또한, 관리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용 포스터와 현수막을 현장에 부착했다.



작업중지 안내 자체 제작 포스터

## 안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전임직원 안전의식 역량 강화

안전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현장이다. 현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안전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안전이슈와 사고사례, 작업 안전수칙 등을 공사 직영 및 자회사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WEEKLY 안전섹션’을 운영한다. 또한, 본사에서 자회사 작업현장까지 안전정보를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험요인 발굴 우수부서 포상제도, 안전 BP(Best Practice)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 BP제도는 전국 현장의 우수한 안전관리 개선 성과를 평가·공유하고 전사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에서 총 45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8건을 포상하기도 했다.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기본 권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도 시행

근로자는 맞춤형 종합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 건강플러스+ 프로그램(금연친구 교실, 허리둘레 5% 줄이기, 힐링요가, 명상 등), 심리 전문 상담프로그램, 건강증진 수기공모전, 자가 건강체크·앱 활동 건강관리 등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참여하도록 운영한다.

## 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 ○○기업 사례

### 더 이상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 기술투자

○○기업에서는 2018년, 2020년 1건씩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장의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고소작업차량을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사 차원의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현'을 안전방침으로 삼았다.

먼저 위험·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장비를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노후된 통신주나 맨홀, 전원시설을 교체하고, 통신구 내 소방시설을 보강했고 통신 전주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IoT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모에 활선경보기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비를 구입했다.



본사에는 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광역본부에 안전보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산업 안전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작업방법을 변경하거나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추락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철탑에 올라 측정기를 직접 연결해야 했지만,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직접 오르지 않고도 점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철탑에  
올라가지 않고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추락의 위험을 제거  
공사현장 위험시설 경보  
APP 활용 중**



작업자의 위치와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현장 위험시설 정보 모바일 App’과 순회일지를 기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크 모바일 App’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 기술투자가 효과를 보려면 안전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이러한 기술투자와 함께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협력사를 포함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했고,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작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본사와 광역본부 주관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특히 협력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또한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정하고 위반 시 경고 없이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22년부터 시행했다.

- \* ①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자 또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장비 사용자
- ②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미준수자 ③ 작업허가서 없이 작업한 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 특히 추락, 감전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VR 교육도 실시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한다. 현재 안전체험관은 일부 지역에 있지만, 수도권에도 추가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3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VS 불량사례

### 안전보건관리체계 선제적 도입 현장

A사는 시공능력 순위 40위권의 종합건설업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지난 4년간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기업이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15년에 처음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명이 되었다. 부서장의 직급도 부장에서 임원이 되었다.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m 이상 굴착할 때는 반드시 흠막이를 설치하고, 층고가 4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한다. 시스템비계 사용은 기본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갱폼(gang-form) 등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 계획서를 본사 안전전담 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일일 단위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소장이 직접 챙긴다.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은 '안전관리 APP'을 사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현장소장과 본사에 알린다. 정기적인 안전협의체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사로 보고한다.

본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데, 대표이사도 월 1회 참석한다. 사실 지금의 위험요인 관리체계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이다. 작업자들에게 배포하는 안전관리 포켓북, '안전자격 취득 장려제' 도입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최근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거나 야차 사고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후진적 현장사례

B사는 시공능력 순위 20위 내의 큰 종합건설업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타났다.

현장별로 주요 공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 안전조직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경영자도 모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했다거나 개선방안이 제안되는 일이 드물다. 개선방안이 논의되더라도 본사에 보고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되지도 않는다.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없이 재무적인 측면만 보고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협력업체의 위험작업을 챙기는 원청 관리자도, 본사 안전 전담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도 없다. 본사의 안전조직은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점검자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점검 전이나 후나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을 받았다.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근로자의 참여’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목표는 근로자가 실수하고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다.

# IV

##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 순서

|  |     |
|--|-----|
| <b>I-[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b>        |     |
|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 예시                     | 81  |
| •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예시                      | 83  |
| • 안전중심 경영방침 이행 사례: 한국공항공사              | 84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CEO 리더십 사례         | 85  |
| • 고용노동부 장관 기고문('22.1.6.)               | 86  |
|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1), (2)        | 87  |
| <b>I-[2]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b>            |     |
| • 전담 조직 설치 예시(1), (2)                  | 89  |
| <b>I-[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검 및 조치</b>    |     |
| •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 90  |
| •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예시                  | 90  |
| •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                 | 91  |
| •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92  |
| • 위험 유형별 사고사례 및 원인·대책(추락, 끼임, 맞음, 부딪힘) | 93  |
| <b>I-[4]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b>           |     |
| •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                      | 97  |
| • 대표이사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예산 확대 사례: SK트리켄(주)  | 98  |
| <b>I-[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b>      |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             | 99  |
| <b>I-[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b>       |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등       | 100 |
| •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 100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 101 |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법)                | 103 |
| <b>I-[7]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b>        |     |
|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활동 사례                 | 104 |
| <b>I-[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b> |     |
| •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 105 |
| •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 106 |
| •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 107 |
| <b>I-[9]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b>        |     |
| • 촘촘하고 체계적인 협력업체 평가절차를 구축한 사례          | 108 |
| • 원청과 협력사 간 함께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중인 사례   | 109 |
| •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 110 |
| •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 111 |
| <b>II.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b>     |     |
| •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 112 |
| •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 113 |
| • 아차 사고 보고서 양식 예시                      | 114 |
| <b>IV.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b>        |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                       | 115 |
| • 안전보건 교육대상 사업장 조회 방법                  | 116 |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서식                        | 117 |

## 사례(예시)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 예시

|      |             |
|------|-------------|
| 사업장명 | △△공업(주)     |
| 점검일자 | 2022년 ○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안전관리 상태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개요

| 근로자 현황(명) |     | 재해발생 현황 |       |    |    |   | 재해율 (%) |
|-----------|-----|---------|-------|----|----|---|---------|
| 계         | 135 | 연도      | 재해자 수 |    |    |   |         |
|           |     |         | 계     | 사망 | 부상 |   | 직업병     |
| 사무직       | 20  | 전년도     | 0     | 0  | 0  | 0 | 0.00    |
| 사무직 외     | 115 | 당해 년도   | 0     | 0  | 0  | 0 | 0.00    |

####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현황

##### [관리 및 작업장 등]

-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감독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 게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등
- ◆ 위험성평가 실시(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 ◆ 안전표지,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등의 게시 및 준수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통계의 유지·관리
-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 작업시작 전 점검 및 비정상작업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 ◆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상태
- ◆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끼임재해 예방 등)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월 중 개최하여 근로자 대표 등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결하여 성실히 이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② 현재 게시되어 있는 지게차 작업 관련한 규정은 개정된 내용(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중 별표 1, 4의2호 신설)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장 내 사업의 일부가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업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 분기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근골격계 유해인자 정기조사가 2019년 실시되었으므로 3년이 도래되는 2022년에 정기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기준]**

| 구분       | 중대성 강도 |       |       | 위험성 수준 | 관리 기준   | 내용                                       |
|----------|--------|-------|-------|--------|---------|--|
|          | ③      | ②     | ①     |        |         |  |
| 가능성 (빈도) | ③      | 9(높음) | 6(높음) | 3(보통)  | 6~9(높음) | 즉시 개선<br>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
|          | ②      | 6(높음) | 4(보통) | 2(낮음)  | 3~4(보통) | 개선<br>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            |
|          | ①      | 3(보통) | 2(낮음) | 1(낮음)  | 1~2(낮음) | 현상 유지<br>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 |

\* 개선 후 중대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2”인 경우 현상유지 가능

**가능성(빈도)**

- ③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 ② 발생 가능성이 있음
- 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중대성(강도)**

- ③ 사망, 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
- ②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 ① 아차 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

※ 현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 필요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

| 구분<br>(공정설비<br>장소 등) | 유해·<br>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현재 위험성<br>추정 및 결정<br>(가능성×중대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br>추정 및 결정<br>(가능성×중대성) |
|----------------------|---|----------------------------------|--------------------------------|---|----------------------------------|
| 원료<br>입고·투입          | 원료 용기 이동 시<br>근골격계 부담, 원료<br>투입 시 분진·증기<br>발생으로 인한<br>화재·폭발,<br>유해위험물질 접촉 | 작업 전 스트레칭<br>실시, 작업자<br>방진마스크 착용 | 3x2(높음)                        | 원료투입구에<br>국소배기장치 설치,<br>보호의, 방독마스크<br>지급·착용 지도, 접지,<br>대전방지조치,<br>자동투입설비 설치 | 1x1(낮음)                          |
| 교반기<br>작동            | 교반 시 분진에 의한<br>폭발 위험  | 스크러버 설비<br>작동, 설비<br>정기점검        | 1x3(보통)                        | 인터록 설치,<br>비상조치계획 수립,<br>비상훈련 실시, 접지,<br>불활성 기체 주입                          | 1x2(낮음)                          |
| 소분                   | 제품 소분 시 인화성<br>증기로 인한 화재·폭발,<br>유해위험물질 접촉,<br>보관 용기 이동 시<br>근골격계 부담       | 작업자<br>방진마스크 착용,<br>작업 전 스트레칭    | 3x2(높음)                        | 국소배기장치 설치,<br>방호복, 방독마스크<br>지급·착용 지도, 지게차<br>사용                             | 1x2(낮음)                          |
| 보관운송                 | 제품 적재 시 근골격계<br>부담, 과적재 시 무너짐   | 작업 전<br>스트레칭, 제품<br>3단 이하 적재     | 2x2(보통)                        |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br>주기적인 교육 실시  | 1x2(낮음)                          |
| 점검자                  |   | 안전업무 담당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 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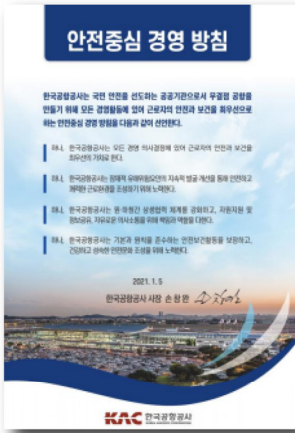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사례(예시)**

**안전중심 경영방침 이행 사례: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2021년도를 '안전중심 경영의 해'로 선포하고 총 86회에 걸쳐 전국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 💡 안전중심 경영 방침 수립
- 💡 안전중심 경영 선포식 개최
- ✔ 안전중심 경영의 해 선포
- ✔ 전직원 안전실천 서약
- ✔ 포스터 약 800부 배포



안전중심 경영 방침 이행을 위해 안전조직 개편, 안전 전담 조직 운영 CEO 및 경영진과 전국 사업장을 매칭하여 소통하는 '안전멘토링제도' 운영 공사는 이러한 안전중심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전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조직을 개편했다. 안전 총괄 기능 수행 및 산업안전 분야 기능을 강화한 안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프로세스별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기 위해 본사 실행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전국공항의 현장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인 미만 중규모 이상 7개 공항에도 법적 의무를 상회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험요인 발굴 우수부서 포상제도, 안전 BP(Best Practice)제도 시행,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전사 전파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CEO 리더십 사례

MK 뉴스

[필동정담] 안전을 습관으로 만든 CEO

김인수 논설위원 | 입력 : 2022.01.19 17:38:11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폴 오닐은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그가 CEO로 선임돼 투자자들을 만난 직후 몇몇 투자자들이 고객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이사진이 정산 나간 히피를 CEO로 뽑았다. 그가 알코아를 죽일 거다. 주식을 당장 팔아라"고 했다.

찰스 두히그가 쓴 책 '습관의 힘'에는 당시 상황이 소개돼 있다. 그날 오닐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알코아를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만들겠다. 사고율 제로가 목표"라고 했다. 투자자들이 재고 상황을 묻자 그는 "여러분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같다"고 했다. "알코아의 현 상황을 알고 싶다면 안전수치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가 안전해야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고 믿었다. 근로자가 위험한 조직, 즉 산재가 발생하는 조직은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분명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작업 공정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증거도 됐다. 당연히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조직의 성과는 낮아진다. 지난 11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딱 그런 예다.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이런 재해야말로 아파트를 저품질로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을 올렸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닐은 말단 직원에게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책임자가 안전수칙을 어기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책임자는 노동자가 다치면 반드시 오닐에게 보고해야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도 내야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승진했다. 핵심 중역도 안전사고를 CEO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됐다. 어느덧 알코아에서는 안전이 조직원들의 '습관'이 됐다. 안전 조치는 당연한 게 됐다. 알코아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주식을 팔라고 했던 투자자는 뼈저리게 후회했다.



##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기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작년 5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제1의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지난해 잠정 집계된 산재 사고사망자 수(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828명이다. 2020년 882명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것이다.

여전히 선진국 수준이나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기업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제고 등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준 한 해이기도 하다.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 확률도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이를 소속 근로자·종사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둘째, 과거 사고 이력의 파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절차들은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기초 중의 기초이지만 특별히 경영책임자 의무로 부여한 것은 안전의 생활화, 즉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등을 기업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법령에 대한 지식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한 바 있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과 환경이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업에서도 처벌의 회피가 아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실천적 노력을 할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사례(예시)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1)

| 안전보건활동<br>목표/세부 추진계획         |               |    | 결<br>재  |         |         |         | 작<br>성                       | 검<br>토   | 승<br>인     |            |  |
|------------------------------|---------------|----|---------|---------|---------|---------|------------------------------|----------|------------|------------|--|
| 전사<br>목표                     | 목표/세부 추진계획    |    | 추진일정    |         |         |         | 성과지표                         | 담당<br>부서 | 예산<br>(만원) | 달성률<br>(%) | 실적/부진사유  |
|                              |               |    | 1<br>분기 | 2<br>분기 | 3<br>분기 | 4<br>분기 |                              |          |            |            |  |
| 산재<br>사고<br>감소<br>100%<br>목표 | 장기<br>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 전 부서     | 500        | 100%       | - 3/20 30개 공정<br>실시                                      |
|                              |               | 실적 |         |         |         |         |                              |          |            |            |  |
|                              | 수시<br>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전 부서     |            | 5건         | - 4/15 1공장 라인중축 등<br>5건                                  |
|                              |               | 실적 |         |         |         |         |                              |          |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br>100%                | 전 부서     | -          | 100%       | - 고위험 30건<br>개선완료  |
|                              |               | 실적 |         |         |         |         |                              |          |            |            |  |
|                              | 아차 사고<br>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안전       | -          | 50%        | - 80건 발굴 및<br>개선완료<br>- 참여 독려를 위한<br>이벤트 추진 예정           |
|                              |               | 실적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br>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안전       | -          |            |  |
|                              |               | 실적 |         |         |         |         |                              |          |            |            |  |
|                              | 작업표준<br>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안전       | -          |            |  |
|                              |               | 실적 |         |         |         |         |                              |          |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안전       | -          |            |  |
|                              |               | 실적 |         |         |         |         |                              |          |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br>(화재, 누출,<br>대피, 구조) | 전 부서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br>- 4/15 가스누출 대비<br>* 코로나19로 구조훈련<br>미실시 |
|                              |               | 실적 |         |         |         |         |                              |          |            |            |  |
|                              | 작업허가서<br>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 부서     | -          |            |  |
|                              |               | 실적 |         |         |         |         |                              |          |            |            |  |
| 작업 전<br>미팅(TBM)<br>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 부서                         | -        |            |            |  |
|                              | 실적            |    |         |         |         |         |                              |          |            |            |  |
| 안전관찰제도<br>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전 부서                         | -        |            |            |  |
|                              | 실적            |    |         |         |         |         |                              |          |            |            |  |
| 안전보건 예산<br>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전 부서                         | -        |            |            |  |
|                              | 실적            |    |         |         |         |         |                              |          |            |            |  |
| 성과측정 및<br>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전 부서                         | -        |            |            |  |
|                              | 실적            |    |         |         |         |         |                              |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전 부서                         | -        |            |            |  |
|                              | 실적            |    |         |         |         |         |                              |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1회/반기   | 안전                           | -        |            |            |  |
|                              | 실적            |    |         |         |         |         |                              |          |            |            |  |

**사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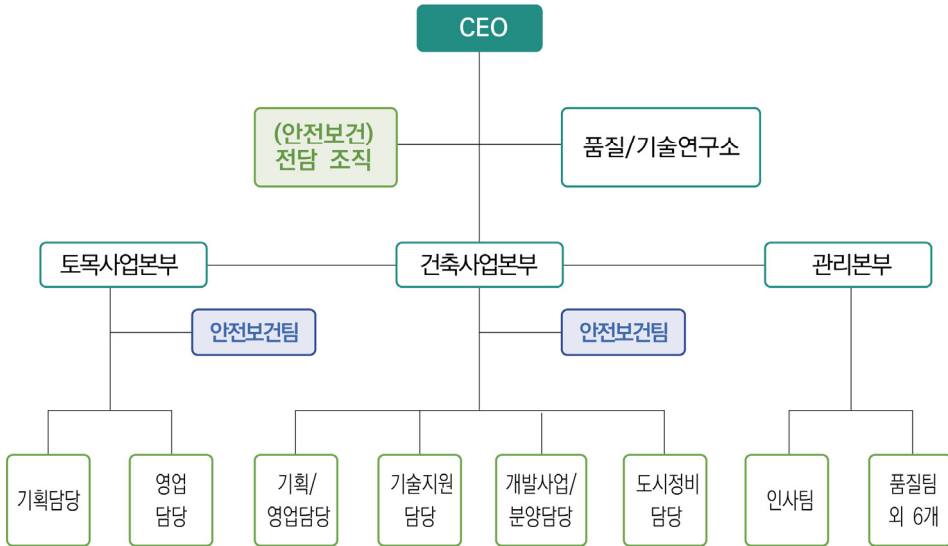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작성 예시(2)**

|      |  |                        |
|------|--|------------------------|
| 작성팀  |  | <b>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b> |
| 작성자  |  |                        |
| 작성일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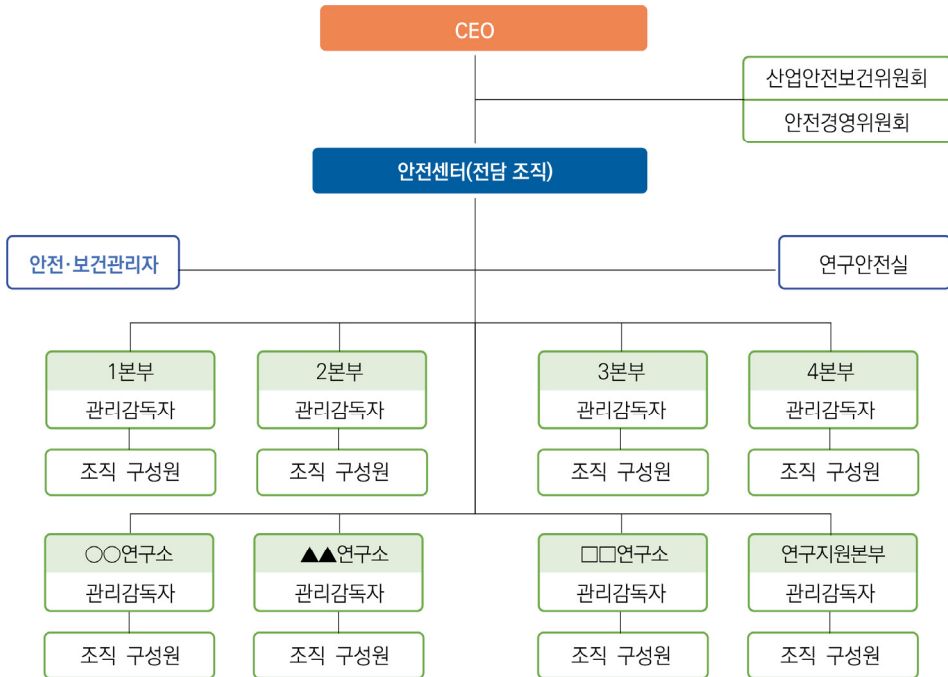
| 중요 목표                       | 세부 목표(Target) |      |       |     |    |         |   |   |   |   |   |   |   |   | 소요 예산 | 검토 |    |    |    |
|-----------------------------|---------------|------|-------|-----|----|---------|---|---|---|---|---|---|---|---|-------|----|----|----|----|
|                             | 세부 항목         | 추진계획 | 성과 지표 | 담당자 | 구분 | 추진일정(月)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11 | 12 |
| 추락사고<br>위험요인<br>발굴<br>및 조치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끼임사고<br>위험요인<br>발굴 및<br>조치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안전보건<br>시정조치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작업 전<br>안전미팅<br>(TBM)<br>실시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사례(예시)

전담 조직 설치 예시(1)



전담 조직 설치 예시(2)



**사례(예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예시**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br>(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br>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방호장치                       | 점검주기 | 발생가능<br>재해형태 |
|----|---------------------|-------|------------|----|---------------|----------------------------|------|--------------|
| 1  | 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br>안전검사   | 광전자식                       | 3개월  | 끼임           |
| 2  | 프레스(P-5~8)          | 30ton | 2공장        | 5  | 산안법<br>안전검사   | 광전자식                       | 3개월  | 끼임           |
| 3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br>관리법검사 | 법정방호장치                     | 1개월  | 부딪힘,<br>넘어짐  |
| 4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br>안전검사   | 과부하방지,<br>훅해지장치,<br>권고방지장치 | 3개월  | 부딪힘,<br>끼임   |
| 5  | 크레인(C-4,5,6)        | 10ton | 2공장        | 3  | 산안법<br>안전검사   | 과부하방지,<br>훅해지장치,<br>권고방지장치 | 3개월  | 부딪힘,<br>끼임   |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서식 예시**

| 화학<br>물질  | CAS<br>No   | 분<br>자<br>식 | 폭발한계<br>(%) |        | 노출<br>기준 | 독<br>성<br>치  | 인<br>화<br>점<br>(℃) | 발<br>화<br>점<br>(℃) | 증기압<br>(20℃,<br>mmHg) | 부식성<br>유무 | 이상<br>반응<br>유무          | 일일<br>사용량 | 저<br>장<br>량 | 비<br>고 |
|-----------|-------------|-------------|-------------|--------|----------|--|--------------------|--------------------|-----------------------|-----------|-------------------------|-----------|-------------|--------|
|           |             |             | 하<br>한      | 상<br>한 |          |  |                    |                    |                       |           |                         |           |             |        |
| 메틸<br>알코올 | 67-56<br>-1 | CH3<br>OH   | 5.5         | 44     | 200ppm   | LD50 6200mg/kg Rat,<br>LD50 15800mg<br>/kg Rabbit,<br>LC 50 64000ppm<br>/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br>지극성부식성<br>독성가스 | 0.2㎡      | 1㎡          |        |

- 주) ① 유해·위험물질은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합니다.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합니다.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합니다.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합니다.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합니다.

 **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서식 예시**

| 단위작업<br>장소 | 작업내용           | 위험 코드   | 관련<br>기계·기구·설비<br>(관리번호) | 화학물질명<br>(CAS No) | 발생 가능<br>재해형태  | 관련<br>협력<br>업체 | 위<br>험<br>성 | 비고                                       |
|------------|----------------|---------|--------------------------|-------------------|----------------|----------------|-------------|--|
| P1<br>구역   | 지게차 이용<br>운반작업 | H-P1-01 | 지게차<br>(00000)           | -                 | 부딪힘            | 無              | 고           | 작업지휘자 배치                                 |
|            | 하부피트           |         |                          |                   | 질식             |                |             |  |
| Q2<br>구역   | 화학물질<br>보충작업   |         | ○○탱크<br>(00000)          | 톨루엔<br>( )        | 화재·폭발,<br>급성중독 | 有              | 고           | 작업허가서<br>발급 대상                           |
| 세척실        | 부품<br>세척작업     |         | 세척조<br>(00000)           | 트리클로로메탄<br>( )    | 급성중독           | 有              | 고           | * 국소배기장치<br>성능평가 대상<br>* 방독마스크<br>밀착도 검사 |

**사례(예시)**

**KRAS 시스템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http://kras.kosha.or.kr>)

|    |    |    |
|----|----|----|
| 담당 | 부장 | 대표 |
|    |    |    |

| 작업공정명 :        |               |   | 위험성평가  |                           |             |             |                |   |             | 평가일시 : '22-03-10 |           |             |
|----------------|---------------|---|--|---------------------------|-------------|-------------|----------------|---|-------------|------------------|-----------|-------------|
| 세부<br>작업<br>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관련근거<br>(법적기준)                                       | 현재의<br>안전보건<br>조치         | 위험성         |             |                | 위험성<br>감소대책   | 개선 후<br>위험성 | 개선<br>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위험<br>분류      | 위험발생<br>상황 및 결과                               |  |                           | 가능성<br>(빈도) | 중대성<br>(강도) | 위험성<br>(빈도×강도) |   |             |                  |           |             |
| 원료<br>입고       | 기계적<br>요인     | 무자격자가<br>지게차를 임의<br>운전하여<br>근로자와<br>부딪힐 위험    | 안전보건규칙<br>제99조<br>[운전위치<br>이탈시의 조치]                  | 유자격자<br>운전<br>사동키<br>분리보관 | 1           | 2           | 2<br>(낮음)      | -   | -           | -                | -         | -           |
| 원료<br>입고       | 전기적<br>요인     | 인화성액체<br>(유기용제)<br>주입 중<br>정전기에 의한<br>화재폭발 위험 | 안전보건규칙<br>제325조<br>[정전기로 인한<br>화재 폭발 등<br>방지]        | -                         | 3           | 2           | 6<br>(높음)      | 정전기의 발<br>생 억제 또는<br>제거 조치<br>(배관Bonding<br>/Grounding) | 2<br>(낮음)   | '22-05-30        |           | 홍길동         |
| 원료<br>입고       | 화학적(물질)<br>요인 | 외부에서 탱크로<br>불씨가 유입 시<br>화재·폭발 위험              | 안전보건규칙<br>제269호<br>[화염<br>방지기의<br>설치 등]              | -                         | 2           | 3           | 6<br>(높음)      | 1. 안전<br>작업자가<br>절차 준수<br>2. 화염<br>방지기<br>설치            | 3<br>(보통)   | '22-03-30        | '22-03-25 | 서<br>비<br>스 |
| 원료<br>입고       | 화학적(물질)<br>요인 | 인화성 액체의<br>증기가 점화되어<br>화재·폭발 위험               | 안전보건규칙<br>제230조<br>[폭발의<br>위험이 있는<br>장소의 설정 및<br>관리] | 작업자<br>교육                 | 2           | 3           | 6<br>(높음)      | 폭발위험<br>장소 설정<br>/관리<br>(폭발위험<br>장소 구분도<br>작성)          | 3<br>(보통)   | '22-04-30        |           | 황<br>건<br>설 |
| 원료<br>입고       | 화학적(물질)<br>요인 | 주입구 주변<br>유증기 흡입으로<br>인한 건강 장애<br>발생 우려       | 안전보건규칙<br>제450조<br>[호흡용<br>보호구의<br>지급 등]             | 보호구<br>마 착용               | 2           | 2           | 4<br>(보통)      | 개인보호구<br>사용<br>(병독마스크)                                  | 2<br>(낮음)   | '22-03-31        | '22-03-15 | 이<br>보<br>건 |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 사례(예시)

### 위험 유형별 사고사례 및 원인과 대책



#### 추락 사고

'21년 351명이 추락 사고로 사망

#### 사고 개요

##### “방심이 부른 추락 사고! 밧줄에 매달린 생명이 위태롭다”

- 2021년 2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작업 진행
- A는 강관비계 작업발판 3단에서 발판 상부 구간의 미장작업을 완료한 후, 발판 하부구간 작업을 위해 2단으로 이동하던 중 높이 약 5.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강관비계는 틈새가 넓어 추락위험이 높았고, 작업발판 간 이동 통로가 없어 안전난간에 매달려 이동한 것으로 밝혀짐
- 확인 결과, 작업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음

#### 전문가 진단

##### 사고 원인

- ① 안전한 통로 미설치
- ②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실시
- ③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재해예방 대책

- ① 시스템비계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통로 확보
- ②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 ③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실시
- ④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실시





사고 개요

“무심코 시작한 설비 점검, 참사를 부르는 건 순식간”

- 2021년 3월,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C는 사출성형기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자 점검에 나섬
- 사출성형기의 상부 프레임과 이동형판 사이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원료가 투입되는 노출 부위를 확인하던 중 이동형판이 상승하면서 C의 가슴 부분이 사출성형기 고정 프레임 사이에 끼임
- 119 구조대가 10분 만에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재해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에 대기한 상태



동료가 버튼을 누르자 게이트가드가 닫히면서 금형이 움직여 끼임

전문가 진단

사고 원인

- ① 유지·보수·점검 시 전원 미차단
- ②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또는 「작업허가제」 미실시
- ③ 관리감독자 부재

재해예방 대책

- ① 작업절차 준수: 전원 차단 후 점검
- ②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③ 「잠금 및 표지부착(LOTO)」 또는 「작업허가제」 도입
- ④ 관리감독자 배치



사고 개요

“훅 해지장치 없는 줄걸이 작업, 사고를 부른다!”

- 2020년 4월, 작업자 E는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지방도로에 설치된 통신 전주 철거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전주를 인양한 후 이동식 크레인 적재함에 거치하는 작업 중
- 전주가 훅에서 이탈하면서 인근 작업자 E의 머리에 떨어짐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훅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해지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밝혀짐

전문가 진단

사고 원인

- ① 설치된 훅 해지장치 해제
- ② 중량물 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 배치
- ③ 작업계획서 미작성
- ④ 관리감독자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재해예방 대책

- ① 크레인 등 위험기계 인증제품 사용 및 정기검사 실시
- ② 설치된 방호조치 해제 금지
- ③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낙하 위험이 있는 곳 접근 금지
- ④ 관리감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사고 개요

“목숨 위협하는 충돌재해!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가 답이다”

- 2021년 4월, 북구의 한 샘물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D가 사내 물류운반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오던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퀴에 깔려 사망
- 지게차는 전조등,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등을 갖추고 정상 작동했으나,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포장품 등에 가려져 보행자를 보지 못함
-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전문가 진단

사고 원인

- ① 보행자 안전통로 부재
-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로에 안전표지 미설치
- ③ 지게차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자격, 시야 확보, 안전띠 착용)
- ④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미배치

재해예방 대책

- 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
- ② 무자격자 지게차 운행금지 등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보완
- ③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④ 지게차 운행 시 작업지휘자 또는 신호수 배치
  - + 지게차 작업 시 기본 안전수칙: 자격자 운전, 시야 확보, 안전띠 착용

## 사례(예시)

###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예시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1 | 2022 |
|-----------|--|------|------|
| 인력 및 시설분야 |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      |
|           | • 안전검사 실시                              |      |      |
|           |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      |
|           |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      |      |
| 안전분야      |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      |
|           |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      |
|           | • 위험성평가 실시                             |      |      |
|           | • 안전보호구 구입                             |      |      |
| 보건분야      | • 작업환경측정 실시                            |      |      |
|           | • 특수건강검진 실시                            |      |      |
|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      |
|           | • 휴게·위생시설 관리                           |      |      |
| 기타        |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br>- 교육 지원<br>- 시설 지원 |      |      |
|           |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      |
| 예비        | • 예비비                                  |      |      |

대표이사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예산 확대 사례: SK트리켄㈜

세종사에서 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SK트리켄㈜

대표이사는 '21년에 SHE팀(Safety, Health, Environment)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두었다. 그리고 직접 SHE 팀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HE위원회도 구성했다. SHE위원회 참석자는 주기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매분기 열리는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부서장이 참석하고, 매월 회의는 대표이사와 SHE팀원이 참석한다.

SHE위원회에서는 위험요인 발굴부터 시정조치 이행·확인여부까지 안전보건 활동의 전반을 다룬다.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은 매월 SHE팀과의 회의에서 보고받는다.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SHE위원회를 통해서 안전보건 예산이 이전보다 100%나 증가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핵심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직접 대응하면서 조치에 필요한 안전 예산을 배정·집행한다는 점이다. SHE위원회 운영으로 이전보다 안전보건 예산이 약 100% 증가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게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SHE위원회의 월별, 분기별 활동은 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인트라넷, 작업장, 식당 게시판 등에 공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받지 않고 직접 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HE위원회의 매월, 매분기 활동은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작업장, 식당 게시판 등에 공유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참여의 효능감이 커진다.

## 사례(예시)

###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예시

#### 평가기준

|    |  |
|----|--|
| 양호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
| 보통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
| 미흡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

#### 평가표(안)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평가 |    |    |
|-------------------|----|---|----|----|----|
|                   |    |   | 미흡 | 보통 | 양호 |
| 안전<br>보건관리<br>책임자 |    |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
|                   |    |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    |    |    |
|                   |    |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    |
|                   |    |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    |
| 관리<br>감독자         |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    |    |
|                   |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    |
|                   |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    |
|                   |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    |
|                   |    |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    |
|                   |    |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    |    |
| 안전<br>보건총괄<br>책임자 |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    |    |
|                   |    |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    |    |
|                   |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    |    |
|                   |    |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    |

\* 평가 주기: 반기 1회 이상 평가

## 사례(예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등

| 구분  | 적용 사업장  | 선임자격  | 주요 업무   |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15조)<br>* 공장장, 현장소장 등                    | • 업종별 상이<br>- (건설) 20억원 ↑<br>- (제조) 50명 ↑<br>-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br>- (기타) 100명 ↑                                   |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                                      |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br>•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br>•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br>•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br>•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 관리감독자 (제16조)<br>* 부사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 • 5인 이상   |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 (해당작업)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br>•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br>• 보고 및 응급조치<br>• 업무에 대한 협조<br>•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제62조)                                     | • 업종별 상이<br>- (건설) 관계수급인 공사 금액을 포함한 20억원 ↑<br>- (제조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100명 ↑<br>※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명 ↑ |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br>*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둔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지정 |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br>• 작업중지<br>•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br>•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안전관리자 (제17조)<br>* 건설 120억원 ↑, 제조 등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 업종별 상이<br>- (건설) 80억원 ↑<br>- (제조 등) 50명 ↑<br>- (부동산, 사천처리업) 100명 ↑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br>•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 보건관리자 (제18조)  | • 업종별 상이<br>- (건설) 800억원 ↑<br>※ 토목공사는 1,000억원 ↑<br>- (제조 등) 50명 ↑<br>※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br>•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br>•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br>•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19조)                                     | •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br>※ 제조,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 이수 (겸임 가능)                        |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 산업보건의 (제22조)<br>*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동일   |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br>•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 ▲ (제조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50명 이상)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 ▲ (건설업) 안전관리자 / (80억원 이상\*)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2명 이상  
보건관리자 / (800억원 이상, 600명 이상) 1명 이상  
\* 2022년 7월 1일부터 60억원 이상,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산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 ▲ (그 외 업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 (대상업종)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산업보건의 (대상) 5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제외대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사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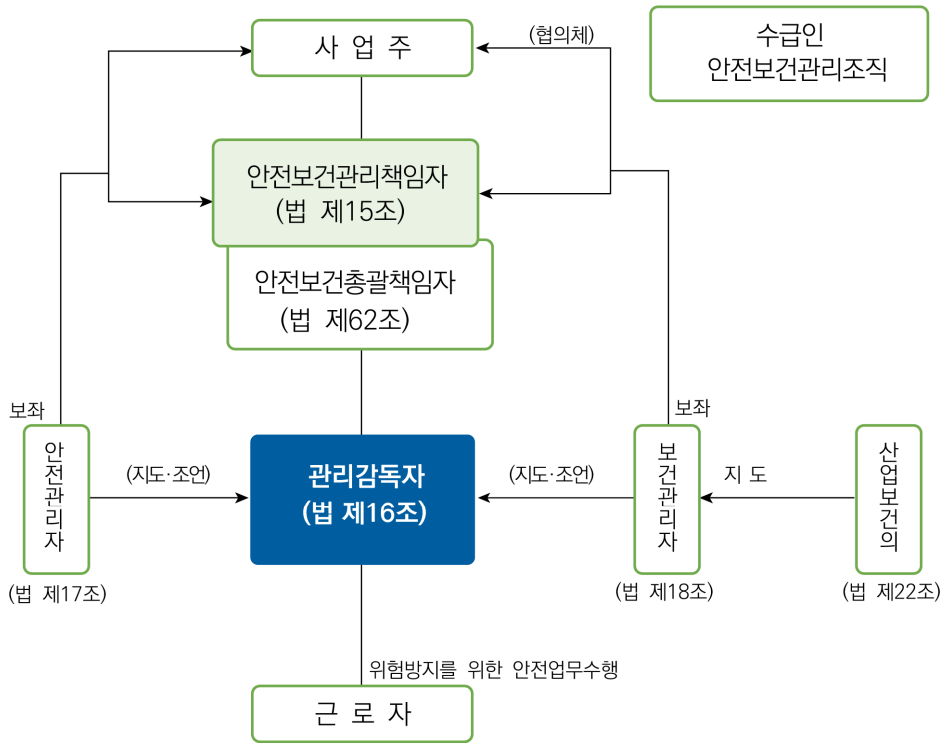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비고 |
|-------------------------|----|--|----|
| 안전<br>관리자<br>(산안법 제17조)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i> <li>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li> <li>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li> <li>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li> <li>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    |
| 보건<br>관리자<br>(산안법 제18조)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i> <li>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5.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li> <li>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ol>   |    |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비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li> <li>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li> <li>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li> <li>11.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li> <li>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li> </ul> |    |
|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보건<br/>관리담당자<br/>(산안법 제19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li>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li> </ul>  |    |
|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br/>보건의<br/>(산안법<br/>제22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li> <li>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ul>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법)**



## 사례(예시)

###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활동 사례

#### 화학제품 제조업(A사)

- ‘중대재해ZERO TF’를 구성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잠재 위험성 발굴 절차를 진행했고 '21년 총 4억여 원을 들여 138건의 위험요인을 개선
  -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소한 불편사항까지도 발굴하고 공유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함
- ‘안전 위험요인 개선 제안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채택된 우수제안에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상품권 3~5만원)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익명 안전 의견함’을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하여 안전·보건 활동에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위험요인 발굴 활성화
  -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저시력 근로자용 도수 보안경 지급을 완료하고 20kg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자용 보조 로봇 구매를 진행함

#### 음료수 제조업(P사)

- 현장 내 시설과 동료 등의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 아차 사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성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안전담당 부서는 개선대책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대표이사가 이 결과를 토대로 인력·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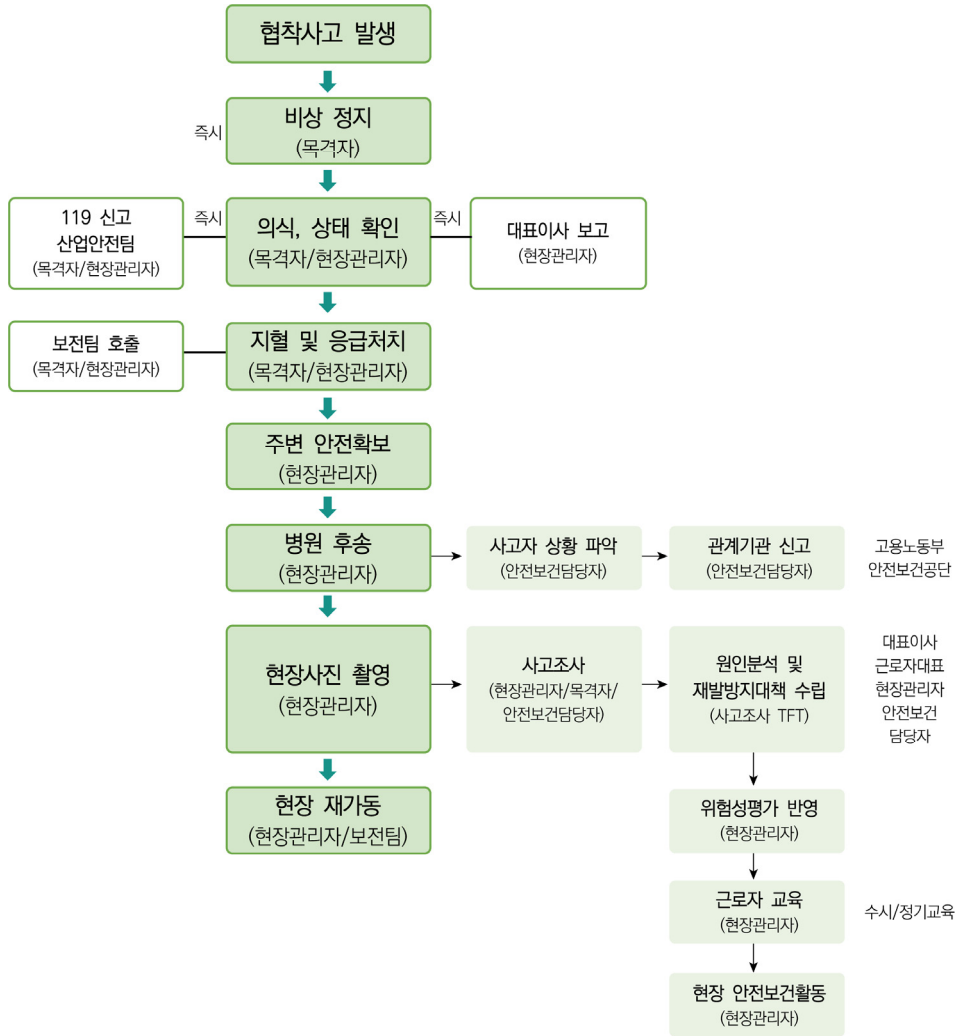


#### 조선 제조업(H사)

- RISK 공모전을 정례화하여 현장 위험요소를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활동을 통해 현장리스크를 지속 발굴 및 개선('21년 1,000여 건 개선)
- 인트라넷에 ‘Safety Market’을 개설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올리면 사내 모든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
- 조직별 Hi-SAFE 활동을 의무화하여 부서별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불안전공정을 1년에 1건 이상 선정하여 개선('21년 90여 건 개선)

사례(예시)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사례(예시)

📍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 시간 및 상황   | 조치사항  | 담당 | 비고 |
|---|---|----|----|
| 00:00~00:01<br>추락사고 발생<br>/환자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li> <li>•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li> </ul>   |    |    |
| 00:01~00:06<br>환자 구조<br><br>119 구조대 신고<br>환자 응급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li> <li>•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li> <li>•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li> <li>•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li> <li>•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li> <li>•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li> <li>•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li> </ul> |    |    |
| 00:06~00:10<br>상황 보고<br><br>현장 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br/>“△△공장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li> <li>• 현장 보존 조치<br/>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li> </ul>  |    |    |
| 00:10~<br>환자 병원 후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li> </ul>   |    |    |

## 사례(예시)

###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 시간 및 상황   | 조치사항  | 담당 | 비고 |
|---|---|----|----|
| 00:00~00:01<br>질식/감전<br>사고 발생<br>/환자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li> <li>•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li> <li>•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li> </ul>   |    |    |
| 00:01~00:06<br>환자 구조<br><br>119 구조대 신고<br>환자 응급조치<br>2차 재해방지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li> <li>•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li> <li>•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li> <li>•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li> <li>•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li> <li>•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li> </ul> |    |    |
| 00:06~00:10<br>상황보고<br><br>현장 보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등 상황보고<br/>“○○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li> <li>• 현장 보존 조치<br/>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li> </ul>  |    |    |
| 00:10~<br>환자 병원 후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li> </ul>   |    |    |

## 사례(예시)

### ▶ 촘촘하고 체계적인 협력업체 평가절차를 구축한 사례

#### 부산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업(근로자 수 약 150명)

○○공업은 협력업체가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업무를 종결하고 나갈 때까지 안전 관리를 위해 촘촘한 평가 및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협력업체의 안전이 곧 ○○공업 전체의 안전’이라는 대표이사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협력업체 선정과정부터 도급 계약 체결, 작업수행 전과 작업수행 중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는 ○○공업의 촘촘한 관리 과정을 살펴본다.

수급업체 선정-계약-작업 前-작업 中 등 4단계 관리절차 마련

화재·폭발 및 밀폐공간작업은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부여

먼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적격 수급업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격 협력업체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점수별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점수대별 등급을 부여하고, 유해·위험작업별로 평가등급 기준을 정하여 해당 평가등급 이상의 업체만 선정하여 안전보건 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적정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면, 계약단계에서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다. 관련 자료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결과는 기록·보존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반영

모든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이 개시되면 원·하청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평가 및 점검 결과는 기록·보존하고 협력업체에도 공유한다.

“안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하청이 안전보건경영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업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 보건공동체로서 원·하청 공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사례(예시)

### 원청과 협력사 간 함께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중인 사례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A사, 그중에서도 도급·용역·위탁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이 기업은 전 구성원과 협력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필수 준수사항

|   |                 |  |
|---|-----------------|--|
| 1 | 변경관리            |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 검토(기술 검토 또는 위험성평가) 후 작업해야 한다.                           |
| 2 | 작업허가관리          | 모든 작업은 작업허가증 최종 승인 후에 수행해야 한다.   |
| 3 | 안전 장구           | 유해화학물질(황화수소, 황산, 알카리) 취급 및 작업을 할 때는 지정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 4 | 밀폐작업            |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 5 | 고소작업            | 고소지역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비계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체결)를 해야 한다.            |
| 6 | 잠금 및 표지부착(LOTO) | 공정 및 전기설비의 보수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설비의 에너지원과 유해물질을 차단/격리하고, 잠금조치와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
| 7 | 흡연 제한           | 사내 허가된 지역에서만 흡연해야 한다.  |
| 8 | 안전 운전           | 사내에서 차량 운전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벨트/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 위반 시 조치기준

-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에 대한 조치 규정(경고, 안전교육, 상벌위원회 개최, 출입금지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



사례(예시)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점수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준  | 40 |    |
| - 리더십                  |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 10 |    |
| - 근로자 참여               |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 1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10 |    |
| II.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리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계획 적정성   | 6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 15 |    |
| - 자원 배정 (시설·장비)        |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br>-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5 |    |
| - 자원 배정 (인력)           |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br>-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15 |    |
| - 비상조치계획               |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5 |    |



**사례(예시)**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 사고조사 보고서        |     |      |      |      |  |
|-----------------|-----|------|------|------|--|
| 사고조사반           |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                 |     |      |      |      |  |
| 사고명             |     |      | 사고일시 |      |  |
| 인적 피해           | 소속: | 성명:  | 직급:  |      |  |
| 물적 피해           |     |      |      |      |  |
| 사고장소            |     | 상해부위 |      | 사고형태 |  |
| 사고내용            |     |      |      |      |  |
| 사고원인            |     |      |      |      |  |
| 피해내용            |     |      |      |      |  |
| 의사/외부<br>전문가 소견 |     |      |      |      |  |
| 재발방지 대책         |     |      |      |      |  |
| 기타내용<br>사고조사 사진 |     |      |      |      |  |

사례(예시)


📌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 구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 관련근거<br>법규/<br>노출기준 | 현재<br>위험성 | 감소대책 |          | 개선 후<br>위험성 | 담당자 | 조치<br>요구일 | 조치<br>완료일 | 완료<br>확인 |
|------------|------------|----|-------------|---------------------|-----------|------|----------|-------------|-----|-----------|-----------|----------|
|            | 분류         | 원인 | 유해·<br>위험요인 |                     |           | NO   | 세부<br>내용 |             |     |           |           |          |
| 기계적<br>요인  |            |    |             |                     |           |      |          |             |     |           |           |          |
| 전기적<br>요인  |            |    |             |                     |           |      |          |             |     |           |           |          |
| 화학적<br>요인  |            |    |             |                     |           |      |          |             |     |           |           |          |
| 생물학적<br>요인 |            |    |             |                     |           |      |          |             |     |           |           |          |
| 작업특성<br>요인 |            |    |             |                     |           |      |          |             |     |           |           |          |
| 작업환경<br>요인 |            |    |             |                     |           |      |          |             |     |           |           |          |

**사례(예시)**

 **아차 사고 보고서 양식 예시**

|                           |  |    |         |
|---------------------------|--|----|---------|
| 작업명                       |  | 등급 | A, B, C |
| 작업내용                      |  |    |         |
| 사고내용                      |  |    |         |
| 발생원인                      |  |    |         |
| 예방대책<br>(조치내용)            |  |    |         |
| 작업현장<br>상황 설명<br>(사진, 도면) |  |    |         |

 **아차 사고 등급 분류기준**

| 등급 | 위험정도  | 조치  |
|----|---|---|
| A  |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 - 중대재해 발생과 동일시<br>- 작업 중단 후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 B  | 재해(사고)발생 시 중상* 또는 시설물 부분 파손 및 작업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 - 산업재해 발생과 동일시<br>- 임시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시행        |
| C  | 재해(사고)발생 시 경상** 또는 당해 시설물의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 - 현 상태로 작업은 가능하나, 교육 시행 등의 안전관리 조치            |

\* 중상: 하루 이상 입원 및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신체활동 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

\*\* 경상: 사망, 중상을 제외한 부상

## 사례(예시)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

| 법령명                | 관련 조문  |
|--------------------|--|
| 산업안전보건법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
| 광산안전법              | 법을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법 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7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 제11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 규율                |
| 원자력안전법             |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법 제59조의2), 방사선장해방지조치(법 제91조) 등                                       |
| 항공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 선박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을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법 제9조), 안전점검(법 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의 보호 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해진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조항(법 제36조)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
| 선원법                |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 제82조), 의사의 승무(법 제84조) 등 규정을 포함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 제14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등을 규정                                  |

## 사례(예시)

### 안전보건 교육대상 사업장 조회 방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시스템 접속 방법

- 모바일** 모바일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접속 → 안전교육대상조회 클릭
  - \* 안드로이드: 구글Play 스토어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 앱 다운
  - \* IOS: App Store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하단 팝업존  
 → 대상사업장 조회시스템 접속(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 안전보건교육대상 여부 조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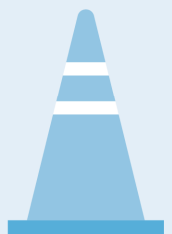
사례(예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서식

| 연간 교육계획 |                  |          |          |                   |        |    |    |    |    |    |    |    |    |     | 결<br>재 | 작<br>성 | 검<br>토          | 승<br>인         |    |
|---------|------------------|----------|----------|-------------------|--------|----|----|----|----|----|----|----|----|-----|--------|--------|-----------------|----------------|----|
| NO      | 교<br>육<br>구<br>분 |          |          | 교<br>육<br>과<br>정  | 일<br>정 |    |    |    |    |    |    |    |    |     |        |        | 대상<br>인원<br>(명) | 교육방법<br>(내·외부) | 비고 |
|         | 안전<br>보건         | 공정<br>안전 | 수급<br>업체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1       | ○                |          |          | 근로자 정기<br>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    |
| 2       | ○                |          |          | 신규 채용 시<br>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
| 3       | ○                |          |          | 관리감독자<br>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    |
| 4       | ○                |          |          | 특별안전보건<br>교육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    |
| 5       | ○                |          |          | 비상사태대비<br>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
| 6       | ○                |          |          | 물질안전보건<br>교육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    |
| 7       |                  | ○        |          | 공정위험성평가<br>교육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    |
| 8       |                  |          | ○        | 작업내용<br>변경자 교육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



memo





#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 중대재해처벌법 조문과 정부지원사업 연계

- 공통 지원사업**
- C-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조·기타업종: 민간, 화학·건설업: 공단 직접 수행)
  - C-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컨설팅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시행령** 제4조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지원사업** C-④ 위험성 평가 인정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원사업**

- A-①, B-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A-② 안전투자 혁신사업
- A-④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등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지원사업** C-⑤ 안전보건교육 지원제도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 ⑨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 **지원사업** A-③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법률** 제4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 조치

**법률** 제4조 3.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한 사항 이행 조치

**법률** 제4조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시행령** 제5조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
  - ④ 미 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업종별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 업종             | 분야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A. 제조업 및 기타 업종 | 안전 | 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끼임방지시설,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보유·임대 사업장</li> </ul>   | <p>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p> <p>☞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clean.kosha.or.kr">clean.kosha.or.kr</a> 참조</p>   |
|                |    | ② 안전투자 혁신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미만 사업장</li> <li>□ 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된 이동식크레인 등 보유사업장</li> <li>②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보유 또는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사업장</li> </ul>  | <p>위험기계 교체(50%, 0.7억원 한도) 및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일부(50%, 1억원 한도) 지원</p> <p>☞ <a href="http://anto.kosha.or.kr">anto.kosha.or.kr</a> 참조</p>   |
|                |    | ③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사내협력업체 근로자수 포함) 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li> <li>□ 건설업 및 조선업 제외</li> <li>*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망사고다발사업장</li> <li>② 전년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li> <li>③ 공공기관 등 순</li> </ul> </li> </ul> | <p>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사업장에 대해 평가 등급별로 혜택 부여</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a href="http://kosha.or.kr">kosha.or.kr</a>)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조</p> |
|                |    | ④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li> </ul>   | <p>산재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한도 10억원) 융자 지원</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a href="http://kosha.or.kr">kosha.or.kr</a>)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 지원 참조</p>                 |
|                |    | ⑤ 안전동행 프로그램 구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업(프랜차이즈, 단체급식), 도소매업(대형유통), 건물관리업, 기타의 본사 및 현장(지점)</li> </ul>   | <p>지점을 다수 보유한 본사의 안전보건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a href="http://kosha.or.kr">kosha.or.kr</a>) → 사업소개 → 서비스지원 → 안전동행프로그램 구축지원 참조</p>   |
|                |    | ⑥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이용 종사자*</li> <li>* ① 이륜차 ② 택배기사 ③ 대리·택시기사</li> </ul>  | <p>플랫폼 이용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플랫폼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사고다발구역 알림, 스팟교육영상 제공 등) 무료 제공</p> <p>☞ <a href="http://service.kosha.or.kr">service.kosha.or.kr</a></p>  |
|                | 보건 | ⑦ 작업환경 측정 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인 미만</li> <li>□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의 별표21에 규정</li> </ul>  | <p>작업환경측정 비용(신규 100% 100만원 한도, 기존 70% 40만원 한도) 지원</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a href="http://kosha.or.kr">kosha.or.kr</a>)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참조</p>   |

| 업종             | 분야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⑧<br>배치 전·<br>특수건강<br>진단비용<br>지원                | <input type="checkbox"/> 30인 미만<br><input type="checkbox"/> 특수건강진단 대상<br>유해인자* 보유사업장<b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br>제201조의 별표22에 규정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br>100% 지원<b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br>→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br>참조                      |
|                |    | ⑨<br>필수노동자<br>직종별<br>건강진단                       | <input type="checkbox"/> 환경미화업(30인 미만) 또는<br>택배기사, 배달종사자,<br>대리운전원, 온라인배송기사,<br>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자에<br>해당하는 사람   | 건강진단 1,2차 검진 비용 80% 지원<b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br>→ 사업소개 → 재정지원 → 필수노동자<br>직종별 건강진단 참조                       |
| B.<br>건설업      | 안전 | ①<br>클린사업장<br>조성 지원                             | <input type="checkbox"/> 50억원 미만<br><input type="checkbox"/>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을<br>설치하는 현장<br>* 시스템비계, 안전방망,<br>사다리형 작업발판  |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br>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br>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임차 및<br>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br>☞ clean.kosha.or.kr 참조                 |
|                |    | ②<br>질식재해<br>예방지원<br>(One-Call<br>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 보유사업장<br>*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br>규칙』 제618조의 별표18에<br>규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원,<br>현장 교육 및 장비 무상대여 등<br>☞ 대여성: 1644-8595   |
|                |    | ③<br>건설일용직<br>근로자<br>배치전·<br>특수건강<br>진단비용<br>지원 | <input type="checkbox"/>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br>보유사업장<b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br>제201조의 별표22에 규정  | 배치 전·특수건강진단 1,2차 검진비용<br>100% 지원<b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br>→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br>참조                      |
| C.<br>모든<br>업종 | 안전 | ①<br>안전보건<br>관리체계<br>구축 컨설팅                     | <input type="checkbox"/> (제조·기타) 50인~299인<br>* 우선순위 ① 고위험<br>② 50~100인 기업<br>③ 안전관리 자체 선임<br><input type="checkbox"/> (화학) 99인 이하<br><input type="checkbox"/> (건설) 201~1000위 기업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br>안전보건관리체계(7대 핵심요소)<br>구축·지원<br>☞ 문의: 1644-4544   |
|                |    | ②<br>안전보건<br>경영시스템<br>(KOSHA-<br>MS)<br>구축 컨설팅  | <input type="checkbox"/> KOSHA-MS 인증을 받고자<br>하는 모든 사업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시 실태심사<br>전후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컨설팅<br>지원<br>☞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br>→ 사업소개 → 건설안전 →<br>안전보건경영시스템 참조 |
|                |    | ③<br>소규모<br>사업장<br>안전보건<br>기술지원<br>(위탁)         | <input type="checkbox"/> 50인 미만 고위험업종·설비<br>보유 사업장<br><input type="checkbox"/>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 재해발생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br>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여<br>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br>안전관리기술지원(안전,보건,건설,화학,<br>서비스분야)<br>☞ 문의: 1644-4544          |

| 업종 | 분야 |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④ 위험성평가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인 미만 사업장</li> <li>□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li> </ul>  | <p>우수사업장 인정 시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및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보조금 1천만원 추가지원 등 혜택 부여</p> <p>* 50인(건설업 120억)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p> <p>☎ kras.kosha.or.kr 참조</p> |
|    |    | ⑤ 안전보건 교육 지원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li> </ul>   | <p>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 소속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기교육을 공단에서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 지원</p> <p>☎ koshats.or.kr 참조</p>                                   |
|    |    | ⑥ 건강관리 카드 발급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 등 16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li> <li>*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의 별표25에 규정</li> </ul>  | <p>직업성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참조</p>                  |
|    |    | ⑦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로사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로 특정 조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li> <li>* ①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고위험 이상 ③ 만 55세 이상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뢰 등</li> </ul> | <p>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에게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진단결과 뇌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자에게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참조</p>   |
|    | 보건 | ⑧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리미 서비스 제공가능 물질(165종)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 또는 근로자</li> </ul>  | <p>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정보(노출량, 유해성 등)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출량 평가 등 무료서비스 지원</p> <p>☎ 문의: 052-703-0387</p>  |
|    |    | ⑨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근로자</li> <li>*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 지원</li> </ul>   | <p>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참조</p>                                    |
|    |    | ⑩ 직업 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피해자의 가족 등</li> </ul>  | <p>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p> <p>☎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 지원 → 근로자 건강센터 참조</p>  |

## 참고1 ▶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 아래의 순서로 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 순서 | 방법                           | 내용   |
|----|------------------------------|--|
| ①  | 지배·관리 사업장 및<br>도급·용역·위탁사업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 지역 사업장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판단 기준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결정</li> </ul>  |
| ②  | 조직·인력 등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령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 전담 조직 설치</li> <li>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구성</li> </ol> </li> </ul>  |
| ③  | 목표, 기준, 절차,<br>매뉴얼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령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li> <li>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li> <li>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li> <li>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li> <li>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li> <li>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li> </ol> </li> </ul>  |
| ④  |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령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이행</li> <li>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li> <li>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li> <li>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li> <li>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li> <li>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li> <li>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li> </ol> </li> <li>시행령 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li> <li>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li> </ol> </li> </ul> |
| ⑤  | 반기 1회 이상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령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li> <li>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li> <li>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li> <li>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매뉴얼</li> <li>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기간 기준</li> </ol> </li> <li>시행령 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li> <li>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li> </ol> </li> </ul>   |



2022년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50~299인, 제조·기타업종) 컨설팅 지원

\* '22년 사업예산(한시) : 58억원(사업비 56억원, 운영비 2억원)



## 사업계획

### 대상 기업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 규모 중소기업(50~299인) 2,240개소
- 컨설팅 신청 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기업선정
  - \* ① 고위험 ⇒ ② 소규모(50~150인) ⇒ ③ 안전관리자 자체선입(안전관리 미대행) 順
  - \*\* 제외 대기업 2,704개소, 현장지원단 컨설팅('21년, 400개소), 화학업종 컨설팅('22년, 500개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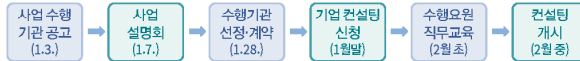
### 컨설팅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7대 핵심요소) 구축·지원  
예)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컨설팅 일정 및 방법

- 컨설팅('22.2~6월), 모니터링(대상 5~10%, 9월), 결과 평가(10월)

\* 세부일정



- 민간 수행요원(2인 1조 편성), 대상 기업별 4회 이상 방문  
\* 컨설팅 수행 시 기업 본사에서 반드시 참여하고 사업주(CEO) 등 면담 2회 원칙

- 컨설팅 신청(접수) 담당

| 주관기관   | 접수·선정심사 권역   | 주관기관     | 접수·선정심사 권역   |
|--------|--|----------|--|
| 서울광역본부 |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 강원동부<br>[광역사업부] 02-6711-2855   | 대구광역본부   |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br>[광역사업부] 053-609-0520                   |
| 부산광역본부 |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br>[광역사업부] 051-520-0535           | 인천광역본부   | 인천, 경기, 경기북부, 고안파주, 경기중부, 경기서부, 경기동부<br>[광역사업부] 032-5100-528 |
| 광주광역본부 |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br>[안전인증부] 062-949-8726 | 대전세종광역본부 | 대전·세종, 충남, 충북, 충북북부<br>[광역사업부] 042-620-56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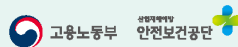
## 운영사항

### 운영위 개최

- 컨설팅 사업개시 후 지역별 운영위원회 개최(매월)  
\* 기관-공단-고용부 기관별 컨설팅 수행현황 점검, 예로사항 확인·개선, 지역 내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안전관리 강화 분위기 조성

###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에도 적극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시행일 : '22. 1. 27. (50인 미만 사업장 등 '24. 1. 27.)

1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frac{1}{2}$  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2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1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2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3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만성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랩토스피라증 / 틴자-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갑상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3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3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4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내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 참고4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의무 주체 | 자연인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br>-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사업주(개인, 법인)<br>- 다만,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  |
| 보호 대상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br>(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영 제67조)  |
|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br>(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 50억원 미만 공사는 '24.1.27.부터 적용)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br>(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제외)   |
| 재해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망자 1명 이상</li> <li>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li> <li>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망자 1명 이상</li> <li>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li> <li>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li> </ul> </li> </ul>  |
| 의무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li> <li>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li> <li>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li> <li>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전기·열 등 에너지 사용 시</li> <li>② 굴착·채석 등 위험작업 시</li> <li>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li> </ul> </li> <li>◎ 사업주의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li> <li>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작업</li> <li>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li> </ul> </li> </ul> |
| 처벌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인 (사망)<br/>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li> <li>(부상·질병)<br/>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 <li>◎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li> <li>(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인 (사망)<br/>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li> <li>(안전·보건 조치위반)<br/>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li> <li>(안전·보건조치 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li> </ul>   |

## 참고5 ▶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 구분                           | 위치         | 연락처          | 관할지역  |
|------------------------------|------------|--------------|---|
| 서울고용노동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서울시        | 02-2250-5897 | 서울시   |
| 중부고용노동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인천시        | 032-460-4428 | 인천시·부천시·김포시<br>·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br>·양주시·포천시·연천군<br>·고양시·파주시                                       |
| 강원지청<br>(산재예방지도과)            | 춘천시        | 033-269-3581 | 강원도   |
| 경기도고용노동지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경기도<br>수원시 | 031-259-0249 |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br>·하남시·이천시·광주시<br>·여주시·양평군·광명시<br>·안양시·과천시·의왕시<br>·군포시·안산시·시흥시<br>·평택시·오산시·안성시 |
| 부산고용노동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부산시        | 051-850-6483 |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
| 대구고용노동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대구시        | 053-667-6388 | 대구시·경상북도  |
| 광주고용노동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광주시        | 062-975-6349 |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
| 제주산재예방<br>지도팀                | 제주시        | 064-728-7131 | 제주특별자치도   |
| 대전고용노동청<br>(광역중대재해<br>관리과)   | 대전시        | 042-480-6358 |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br>세종시   |

**발행일** 2022년 3월

**기 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

**제 작**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규석, 산재예방지원과장 김정수,  
사무관 황현태/최정윤, 주무관 안영곤/김시현, 전문위원 허성환

**인 쇄** 초이스컴(주) 070-4245-9599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이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

누리집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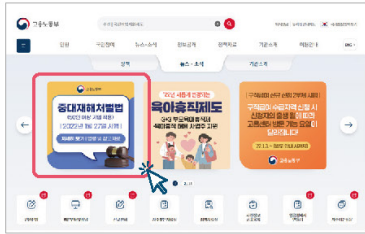


- 법령 자료 (법, 시행령, 해설서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 보도 자료 • 홍보·안내 자료 (시행 안내서, 안내 동영상, 리플릿 등)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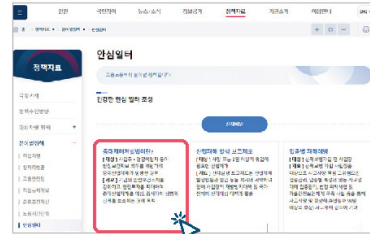
### 1 고용노동부 누리집 →

메인화면 연결배너 **클릭**



### 2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안심일터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클릭**



### 3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① 자주 찾는 메뉴 → 중대재해처벌법 **클릭**

② 팝업존 → 연결배너 **클릭**



###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화면



### • 연결 배너 이미지

